

### ■ 참고 문헌

경찰청(2004).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2004).

「마약류 퇴치 심포지엄」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손봉선(2002). 「청소년 마약류 남용 실태조사 및 대책에 관한 연구」경찰학회보

신동일(2004). 「주요국가의 마약류 통제체제」 서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주왕기외(1993). 「약물남용의 실태와 예방대책」 서울: 한국약물남용연구소

최영인·이종구(2004). 「미국의 노상범죄와 마약의 관련성에 관한 고찰」 한국국제마약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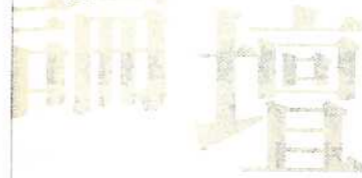
경향신문, 2004. 7. 17.

세계일보, 2001. 8. 21.

일본 세계일보, 2001. 8. 18.

<http://www.joins.com/LA>

<http://www.khan.co.kr/news>



【판례연구】

##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 오 의 현\*

### I. 【대상판례】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중략)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 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 라고 할 수도 없고, 같은 법 제311조, 제315조,

### II. 들어가며

수사기관은 증거수집의 일환으로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현장 등에서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확인하는 수사활동, 즉 '실황조사'를 특별한 제한없이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와 경위를 '실황조사서'에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는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수사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중앙경찰학교 교수요원

1) 대법원 1989. 3. 14. 88도1399(동 판례에 관해서는 뒤에서 상술함) 강유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2 제280면, "실황조사서가 검증조서로서 형식상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생각되나, 사후영장의

그런데, 판례는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으로써 수사현실과 위와 같은 수사관련 규정을 감안하면 어딘가 모순이 없다고 할 수 없다.<sup>2)</sup>

이러한 가운데 최근 등장한 위 【대상판례】에서는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중략)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중략) 그 기재 부분은 증거로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어, 마치 검증의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기재하였다면 증거로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모순 내지 의구심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그간의 관련 판례들의 태도와 추이 및 관련 학설들을 자세하고찰해 봄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판례에서는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관련 학설을 포함) 나아가 수사기관은 실황조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수사방법을 취함이 바람직한

발부를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바, 실황조사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 있음이 실무의 관행이므로 사실상 증거능력을 부인한 것이 된다.” 이외는 달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는 일부 견해도 있는데, 임창호 “범죄수사론” 374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도 검증조서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강용택 “형사소송법강의” 532면,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기재는 이 사건 범행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84. 1. 24. 83도2799)는 점에 비추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 2) 실황조사서는 범죄현장에 가장 근접한 수사자료로 가장 중요한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나, 실황조사 전이나 후에 있어 별도의 검증영장을 발부받는 예가 거의 없는 것이 수사현실이라 할 것임.
- 3) 제318조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①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②피고인의 출정없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피고인이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단, 대리인 또는 변호인이 출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것인가를 검토하여 보고자 한다.

한편, 실황조사서와 관련한 문제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이외에도 증거능력의 인정요건, 영장에 의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로서의 실황조사서의 형사소송법 제318조<sup>3)</sup> 적용여부 (당사자의 동의로써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실황조사서에 기재된 피의자·참고인 등 참여인 진술에 대한 평가, 실황조사서의 증명력, 피의자 등의 참여권 보장 등 기타 여러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간략히 언급하거나 아니면 검토범위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문제들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후에야 비로소 논할 가치가 있으며,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검증조서와 동일한 취급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검증조서의 문제로 다뤄질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연구되어 있어 관련 문제에 대한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Ⅲ.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의 의의

활용되고 있는 수사활동이다.

#### 1.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의 의의

실황조사라 함은 수사기관이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범죄현장 기타 범죄에 관계가 있는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하여 그 존재 및 상태를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경험·인식하는 수사활동으로, 이러한 실황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서류를 실황조사서라 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8조<sup>4)</sup>,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 제104조 내지 제106<sup>5)</sup>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실황조사는 강력사건에 있어 범죄현장에 임하여 범행현장의 상황과 범행의 수단, 방법을 밝히고 범행수단과 방법이 범행현장상황에 부합하는 것인지를 범행의 재연을 통하여 판단하며 잔류증거를 수집·보전하는 것으로 특히 교통사고조사에서 많이

#### 2. 실황조사의 법적 성격

이러한 실황조사는 그 실질이 검증과 같다고 보는데는 이견이 없다고 보이나,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허용)되는 수사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검증과 실황조사의 차이는 검증이 원칙적으로 법관의 영장에 기하여 행하여지는 강제처분임에 반하여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의 임의처분으로서 행해지는데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나,<sup>6)</sup>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5조<sup>7)</sup>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영장에 의하여만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실황조사가 형사소송법상 인정될 수 있는 수사방법인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4) 제49조(실황조사) ①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범죄 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조사를 할 때에는 실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5) 제104조(실황조사) ①범죄의 현장 기타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실황조사는 거주자 관리자 기타 관계자 등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③실황조사서에는 되도록 도면과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5조(실황 조사서 기재상의 주의) ① 실황조사서에는 객관적으로 기재하도록 힘쓰고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자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도 그 지시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 피해자 기타 관계자의 지시 설명의 범위를 넘어서 특히 그 진술을 실황조사서에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와 동법 제24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피의자의 진술에 관하여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또한 그 점을 조서에 명백히 해 두어야 한다.

제106조(피의자의 진술에 의한 실황조사) 피의자의 진술에 의하여 흉기, 장물 기타의 증거자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 증명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 그 발견의 상황을 실황조사서에 정확히 해 두어야 한다.

6) 이재상 “연습형사소송법” 284면, 강용현 앞의 논문 277면 등, 다만 검증이 강제수사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승낙에 의한 검증이나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의 검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음

7)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것이다. 만약, 실황조사가 형사소송법상 허용되는 수사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를 기재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또한 부정함이 논리적이기 때문이다.<sup>9)</sup>

수사기관의 검증이란 사람, 장소, 물건의 성질·형상을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인식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하면서, 다만 예외적으로 승낙에 의한 검증과 실황조사는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가 있는 반면, 검증은 강제수사이므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승낙에 의한 검증이나 실황조사는 수사기관의 검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즉,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sup>9)10)</sup>

위 부정하는 견해는 실황조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公路상의 사건현장에서 행하는 실황조사와 같이 타인의 의사에 반하거나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어떤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임의적인 수사라고 할

지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한다. 왜냐하면, 강제수사와 임의수사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인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가 언제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황조사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영장주의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영장주의는 형해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sup>11)</sup> 또한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영장에 의한 검증만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임의적인 검증활동인 실황조사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sup>12)13)</sup> 검증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행한다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관찰과 기술을 의식적으로 정확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실황조사는 이러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제199조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sup>14)</sup>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취지에 의하면, 수사상 있을 수 있는 모든 검증활동이 강제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제215조에서 영장주의를 규정하였다고 보기보다는 검증활동 중에서 어떤 것은 강제처분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방법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하기 위하여 영장을 필요로 하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수사로 인정함이 합당하다고 할 것이고<sup>15)</sup> 또한, 실제 수사기관이 행한 실황조사가 강제수사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임의수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그 적법·타당성을 논하여야지 막연히 실황조사가 기본권의 제한이나 침해가 언제나 전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황조사 자체를 부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고 보인다.

또한, 실황조사를 광범위하게 행하고 있는 수사현실을 감안하여 실황조사의 적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을 마련한다면 위와 같이 실황조사 자체를 부정하는 견해를 일축할 수 있겠지만,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도 다시 새겨본다면 이 또한 논리적이라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임의적인 검증은 영장없이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형사소송법에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강제수사는 물론 임의수사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에서 사전에 일일이 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수사방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이다.<sup>16)</sup>

즉, 검증보다 기본권의 침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압수에 있어서도 임의제출물인 경우에는 영장없이도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임의동행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상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판례는 물론 학설에서도 당연시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본다면 임의적인 검증활동인 실황조사를 특별히 취급하여 부정하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영장에 의한 검증이나 그렇지 않은 실황조사나 兩者는 범죄현장을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데 어떠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관찰이나 이에 따른 기재의 정확성이 다르다고 볼 수 없을 것이고, 영장주의 원칙의 적용여부에 따라 절차의 신중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이러한 다소간의 차이가 증거능력을 부정할 정도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sup>17)</sup>

②사법경찰관이 범의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8) 판례(1987. 6. 2. 87도705)에서는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 위법한 증거조사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가 당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지는 않고 있지만, 이후 판례에서는 변호인의 접견이 제한된 상태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1990. 8. 24. 90도1285), 진술거부권 불고지 상태에서 작성된 녹화테이프의 증거능력(1992. 6. 23. 92도682) 등을 부정하고 있음

9) 강용현 앞의 논문 280면, 이에 의하면 허용하는 견해가 다수설적인 입장임

10) 승낙에 의한 검증과 실황조사의 구분은 승낙검증이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이 필요하나 승낙의 임의성으로 인하여 허용되는 것인 반면 실황조사는 강제처분이 아닌 公路상의 검증활동처럼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11) 이상돈 "사려연습형사소송법" 378면

12) 다만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에서는 사전 검증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역시 사후영장을 요구하고 있음

13) 심희기 "형사소송법의쟁점" 409면, 부정설의 논거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하는 법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형사소송법을 반대해석하면 현행법 하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실황조사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행하는 실황조사는 원래 영장주의의 제한하에 수행되어야 할 검증을 영장주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회하려고 하는 수사기관의 책략·편법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14) 이재상 "형사소송법(제6판)" 200면

15) 예를 들어, 상해 피해자가 자신의 상해부위와 정도를 담당 사법경찰관리에게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줄 것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검증영장이 필요하므로 영장을 발부받고 나서 확인하여 주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임

16) 형사소송법 제108조 및 제218조에서는 임의제출물인 경우에는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증에 있어서도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압수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의 헌법에서도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비록 임의로 제출한다고 할 지라도 그 이후에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가 제한되는 등 강제적인 효과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이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정리하자면, 실황조사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에 근거한 임의수사방법이고 영장없이 행하여짐에 따른 절차상 신중성의 차이로 인해 증거능력을 달리 볼 정도는 아니라고 여겨지므로 실황조사도 우리 형사소송법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이라고 받아드림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3. 실황조사서가 형사소송법상 "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황조사는 그 실질이 검증이나 임의수사로서 형사소송법상 인정되고 있는 수사방법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러하다면 적법하게 이루어진 실황조사의 그 경위와 결과를 사실 그대로 기재한 서면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이 논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실황조사서가 "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일부 견해<sup>17)</sup>에 의하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증조서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실황조사서는 同 규정에서 말하고 있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조서라 함은 일정한 절차 또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작성된 공권적 문서를 의미하는데<sup>18)</sup> 그 의미 또는 명칭보다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서의 작성방법과 기재요건을 제대로 지켜 작성되었는지가 문제의 본질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비록 "검증조서" 또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는 제목하에 작성되지 않고 "실황조사서"라는 제목을 달고 작성되었다고 할 지라도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작성방법과 기재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실황조사서를 조서가 아니라고 볼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sup>19)</sup>

또한, 검증조서와 실황조사서간에 증거법상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며<sup>20)</sup> 앞에서 본 바와같이 사법경찰관집무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실황조사서의 작성을 명하면서 일정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황조사서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서 말하고 있는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17) 강용현 앞의 논문 283면, 이에 의하면 절차상 신중성의 차이는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의 문제라고 볼이 타당하다고 함

18) 신중문 "형사소송법" 625면

19) 이재상 "형사소송법" 150면

20) 형사소송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검증, 압수 또는 수색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경찰관집무규칙 제50조 제3항에서는 압수조서의 경우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검증조서 또는 실황조사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하여 압수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하여 "조서"가 반드시 독립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압수조서에 갈음하여 작성된 경우 同 압수조서가 위법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임

21) 이재상 "연습형사소송법" 285면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 다수설의 입장<sup>21)</sup>이며 일본판례도 이를 따르고 있다.<sup>22)</sup>

### IV. 관련 판례의 태도 및 추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처음으로 직접 판단하고 있다고 보이는 대법원 판례(1984. 3. 13. 83도3006, 이하 '판례 ①')이라고 함)에서는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할 것이고(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으며(형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 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 것인바(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 이 사건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검증조서에 의하면 동 검증은 이 사건 발생후

범행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으므로 영장없이 시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동 검증조서중 검증연월일 1983. 1. 16은 1983. 1. 6의 오키로 인정된다) 이 검증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사후 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음은 논지가 지적인 바와 같으니 이러한 검증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위 검증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았음은 위법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다.<sup>23)</sup>

위 판례①을 살펴보면, 임의적인 실황조사는 가능하지만("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근거하여 영장없이 검증한 경우에는 사후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하는데, 이 사안에서는 사법경찰관의 검증조서에서 영장없이 시행된 검증이라고 명시하였으므로 사후 영장이 필요하며 사후 영장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식의 논리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새겨진다.

다시 말하면, 판례①의 사실관계에서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의 검증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후영장의 불비로 인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22) 강용현 앞의 논문 283면

23) 日裁判 1960. 9. 8. 수사기관이 임의처분으로 행한 검증 결과를 기재한 이른바 실황조사서도 형소법 제321조 제3항 소정의 서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이 상당하다고 하여 피고인측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더라도 그 작성자가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증명한 때에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시함

24) 이와 같이 판례가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견해가 통설적임

수 없지만 만약 임의적인 실황조사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에 따른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겠다는 취지의 판례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런데, 위 판례① 이후 다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직접 판단하였다고 여겨지는 대법원 판례(1989. 3. 14. 88도1399, 이하 '판례②' 라고 함)가 등장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이 작성한 실황조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1985. 10. 26. 19:30직후인 1985. 10. 27. 10:00에 사고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판사의 영장없이 시행된 것이므로 이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록상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으므로 이 실황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위 판례②에서는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사전 또는 사후영장이 필요한 검증이 아닌

'실황조사' 를 행하고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위 판례①과 판례②를 비교하여 보면, 판례①에서는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검증이라 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사후영장이 없었기 때문에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나, 판례②에서는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실황조사라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직후에 이루어진 실황조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의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증이라고 법원 임의로 간주한 후에 사후영장이 없다는 이유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논리적 구조를 취하여 양자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떻게 보면 판례②는 수사기관의 임의적인 검증활동인 실황조사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sup>25)</sup> 하지만, 위 판례②가 나오기 이전<sup>26)</sup>은 물론 이후<sup>27)</sup>에 있어서도 실황

25)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만약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사고이후 한참을 경과한 후 이루어진 실황조사인 경우에는 비록 임의적인 실황조사라고 할 지라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하여 영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을 것이라고도 생각될 여지가 있음

26)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1983. 6. 28. 83도948)

화재원인에 대한 전문가의 감식없이 화재목적자들의 막연한 진술들만을 토대로 수사의 초점을 특정원인에 맞추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서 증거능력이 없다.(1987. 11. 6. 86고단395)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에 교통사고발생상황과 원인을 증명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버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나 타이어의 굵은 부분이 사고당시 피해자의 머리 끝부분을 스쳐 생긴 흔적이라고 추측하는 기재가 있으나 이는 실황조사서 작성자의 의견 또는 막연한 추측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수 없다.(1985. 6. 26. 85고단19)

27) 원심법정에서도 도주의사를 부인하는 등 피고인이 일관되게 도주의사를 부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고, 피해자의 남편인 이철웅의 진술 및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만으로는 원심 증인 구현규, 김인규의 각 증언과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이 인정하는 사실(2000. 3. 28. 99도5023)

사건 당일 아파트 주방에 있는 식탁과 생크래의 상태에 관한 경찰의 실황조사(수사기록 7권 25면, 61 내지 65면), 제1심의 1996. 2. 14.자 현장검증 및 원심의 현장검증에 의하면(1998. 11. 13. 96도1783) 김창길 및 사고 직후 구조를 담당한 소방관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조사서의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을 다루고 있다고 보여지는 다수의 판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으면서 소송당사자중 일방이 명시·직접적으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속단을 들게 하기도 하지만 (다만, 각 해당 판례에서 피고인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동의하였는지는 별론임) 위 판례② 이후 실황조사서의 증명력을 다룬 판례가 있다고 하여 이를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다고 새기는 것은 위 판례②의 명시적인 입장에 비추어 볼 때,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위 판례② 이후 실황조사서의 증명력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다시 증거능력을 살피고 있는 【대상 판례】가 등장하였다.

【대상 판례】<sup>28)</sup>

가. 사실 관계

사법경찰관 홍길동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원심에서는 이를 증거로 채택하였다.

- 수사보고서내용

1998. 2. 23. 02:00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2동 소재 백운나이트 앞 노상에서 발생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견적서 미첨부에 대하여, 피고인 1이 날이 밝으면 견적서를 제출한다.
2. 진단서 미제출에 대하여, 피고인 1,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는데 현재 심야인 관계로 날이 밝으면 치료 후 진단서 제출한다 하기에 이상과 같이 수사보고합니다.

-기 타

- 작성경찰관인 경장 홍길동이 자신의 소속 및 계급과 이름을 타자한 후 날인하였고 추후 공판에서 진정하게 작성하였다고 진술함
- 피고인은 위 수사보고서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음

나. 판시 사항

위 수사보고서 중 "피고인 1, 2 서로 왼쪽 눈부위에 타박상이 있고, 피고인 1은 무릎에도 찰과상이 있다."라는 기재 부분은 검찰 사건사무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작성하는 실황조사서 또는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범죄현장 또는 기타 장소에 임하여 실황을 조사할 때 작성하는

28) 원심 및 상고이유 등은 확인하기 어려워 기재하지 못하였으며, 판례전문중 본 연구범위와 관련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였음

치안 논단 4

실황조사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단지 수사의 경위 및 결과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므로 그 안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다고 하여 이를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같은 법 제313조 제1항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라고 할 수도 없다.

위 【대상 판례】는 우리의 수사현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비록 【대상 판례】가 직접적으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더욱이 기존 판례②의 태도를 변경하였다고도 볼 수 없지만, 판시사항의

논리적인 구조를 'A(수사보고서)는 B(실황조사서) 또는 C(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가 아니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축약할 수 있을 것이므로, 'B 또는 C는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다시 정리하면 '실황조사서는 증거능력이 있다.'고 받아드린다고 하여도 논리상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둘째, 이전의 다수 판례에서도 '실황조사서'를 언급하고 있었지만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상 근거 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는데, 이에 대하여 처음으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유무를 판단할 법적 기준으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을 제시하고 있으며,<sup>29)30)31)</sup>

셋째, 수사실무상 경미한 상해 피의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자 등이 별도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이를

29) 강용현 앞의 논문 282면, 이에 따르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의 판단기준이 되는 근거규정을 실황조사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증조서라 보고 이에 따라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지는 다수설적인 견해에도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지는 견해가 있었으나, 제312조 제2항 준용설은 실황조사서의 주된 부분인 수사기관이 오판으로 감지한 사항을 기재한 부분이 아니라 피의자였던 피고인 등의 진술을 기재한 부분을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나 이는 부당함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①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②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30) 同 판례에 따르면 수사보고서가 제312조 제1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로 수사보고서는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실황조사서는 조서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황조사서는 물론 기타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일지라도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조서의 기재방법?요건을 갖추었다면 제312조 제1항의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조서에 해당할 수 있다고 여겨짐

31) 통상 판례는 법무부령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등에 대하여 내부사무처리절차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면서 이에 구속되어 판단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대법원 1989. 6. 20. 89도648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 규정으므로 검사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때에 범죄를 인지한 것으로 보아야), 본【대상 판례】에서는 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음

보충하고자 사법경찰관리가 상해부위도라는 관련규정에도 없는 별도의 서식에 상해의 정도와 부위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재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고 할 것인데,<sup>32)</sup> 이와 같은 수사관행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즉, 사법경찰관리의 상해와 관련한 기재가 단순히 그 형식상 잘못으로 인하여 상해와 관련한 유일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수사자료가 공판에서 배척되는 심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법제도의 개선이나 수사실무에 있어서 【대상 판례】의 취지를 반영하여 별도의 기재방법과 요건을 정하여 운용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up>33)</sup>

지금까지 실황조사서와 관련된 판례의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직접적으로 다투지 않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그 증거능력을 굳이 배제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수사기관이

명시적으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검증이라고 적시하면서도 이에 대한 사후영장을 발부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절차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나(판례①의 견해) 이후에는 실황조사서는 수사방법 자체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따른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듯 하다.(판례②의 견해) 하지만, 실황조사서와 관련한 가장 최근 판례인 【대상 판례】에서는 수사기관의 실황조사를 현행 법체계상 인정되는 수사방법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물론, 【대상 판례】만으로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이 있다, 없다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위 판례②에 의하여 임의수사로서의 실황조사마저도 부정하고 있는 듯한 상태에서 이와는 달리 【대상 판례】는 형사소송절차에서 있어 실황조사서의 존재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고 보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32) 이와는 반대로 상해관련 피의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등에게 상해진단서의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상해관련 범죄의 유죄인정을 위하여 반드시 상해진단서가 필요한 것은 아님을 참조(대법원 1996. 12. 10. 96도2529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확정되어야 하고 상해부위의 판시 없는 상해죄의 인정은 위법하다는 점은 논하는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3항 범죄사실의 피해자들은 의사(醫師)와 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들이 흥기에 찔려 입은 상해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면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공범들 또한 피해자들을 흥기로 찔러 그와 같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시인하고 있으며, 원심인정의 범죄사실에 상해부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원심이 진단서 없이 상해사실을 인정하였고 또한 치료일수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심판결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3) 【대상 판례】의 위 3가지 의의에는 포함하여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실황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기재한 서면인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었다고 할지라도 실황조사를 통하여 사법경찰관리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인의 자격으로 증언한다면 사실상 실황조사의 경위와 결과는 증거로서 사용되는 결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상 판례】에서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위 예와 같은 경우도 가능하다고 판단됨

### V. 기타 문제

#### 1.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황조사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증거능력 여부를 가릴 것이 아니라 제312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때에 증거능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작성자인 사법경찰관리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이 있게 된다.

여기서의 진정성립에 대하여 '조서작성명의의 진정성'이 입증되는 것으로 족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아가 기재내용의 진정성까지 요구하는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하여 진정성립은 단순히 작성명의자가 작성하였다는 형식적 진정만이 아니라 실황조사의 대상인 범죄현장 등의 객관적 상황과 실황조사서의 기재가 일치함까지 인정되어야 하는 실질적 진정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sup>34)</sup>

34) 강용현 앞의 논문 284면, 심희기 앞의 책 408면

35) 강용현 앞의 논문 278면

36) 경찰 및 검사가 작성한 실황조서의 기재는 사고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이나 검사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사고를 일으켰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1983. 6. 28. 83도948)

#### 2. 위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실황조사서의 형사소송법 제318조 적용 여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된 증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의거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1990. 9. 14. 90도1263)는 "위 검증조서는 범죄현장에서 급속을 요한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행하여졌고 그후 법원의 사후영장을 받은 흔적이 없다. 따라서 이 검증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는 데다가 설사 피고인이 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하더라도"라고 판시하고 있어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읽혀진다.

#### 3. 실황조사서의 기재된 조사자의 의견

실황조사란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고 실황조사서는 그 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므로 조사자가 현실로 인식한 사실로부터 경험칙에 기하여 합리적으로 이끌어 낸 추리판단을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sup>35)</sup> 조사자의 의견이나 추측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며 만약 기재된 경우에는 증거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sup>36)</sup>

군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실황조사서의 내용이 사건범행 현장을 설명하면서 경찰의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다.(1984. 1. 24. 83도2799)

하나 강제처분이 아니라 임의처분이어서 참여권을 필요적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일시,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고 따라서 그 실황조사서도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sup>37)</sup>

#### 4. 실황조사와 피의자 등의 참여권 등

실황조사도 그 실질이 검증인 이상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검증의 절차·방법 즉, 당사자의 참여(제121조) 및 참여권자에의 통지(제122조), 책임자의 참여(제123조) 야간검증의 제한(제125조) 등의 규정을 따라야 할지가 문제가 될 것이며 특히, 피의자 등의 참여권이 보장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이에 대하여 실황조사의 성질이 검증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9조<sup>37)</sup>에 의하여 제121조가 적용되므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참여권이 있어 미리 일시, 장소를 이들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함 없이 실시한 실황조사는 위법하므로 그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사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 반면,<sup>38)</sup> 실황조사의 성질이 검증이기는

이와 같은 당사자의 참여권의 보장은 검증절차의 공정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비롯된 이상 임의처분이냐 강제처분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참여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sup>40)</sup>

하지만, 실황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워낙 복잡·다양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의 참여권 보장이 사실상 곤란하거나 참여권 보장에 따른 이익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까지 당사자의 참여권을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된다.<sup>41)</sup> (예를 들어, 아직 피의자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영장에 의한 검증과 같이 사전에 계획에 따라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연히 또는 급속히 사법경찰관리가 범죄현장을 인식하는 경우 등)

37)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2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38) 백형구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판례연구4) 331면.

39) 강용현 앞의 논문 287면, 실황조사가 아닌 강제처분인 검증의 경우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이러한 통지없이 실시한 검증의 결과를 기재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함이 통설임.

40) 강용현 앞의 논문 288면, 참여권 보장여부를 증거능력이 아닌 증명력의 문제로 보고 법관의 심증형성에 따라 증명력을 용이하게 배척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능력보다는 증명력의 탄력적 인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고 함

41)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122조의 단서에 의하여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범죄직후에 이루어지는 실황조사의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봄.

VI. 맺으며

검증 역시 강제처분으로서 영장에 의함이 원칙이다. 하지만, 영장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검증활동을 획일적으로 사후 영장을 요하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및 제217조<sup>42)</sup>에 해당하는 검증이라고 간주하여 버리는 것은 실황조사의 필요성, 수사현실, 법논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합리적이지 못하다 할 것이다. 즉, 임의처분으로서의 검증활동(실황조사)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을 긍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실황조사 및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적법한 수사방법과 수사서류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조심

스럽게 결론을 내린다.

다만, 실황조사라고 할 지라도 그 실질이 검증인 만큼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여야 함이 자연스럽다고 생각되나, 현 수사관련 규정인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및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실황조사의 방법과 절차(특히, 참여권과 관련)에 관하여 제대로 마련되어 있다고 보기 곤란한 실정이다.<sup>43)</sup>

그리고, 어떤 상황이라면 영장을 발부받아 검증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영장이 없이도 임의적인 실황조사로도 가능한지<sup>44)</sup>에 대하여 어떠한 수사관련 규정에서도 그 구분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실제 수사담당자가 이를 구분하여 적정한 판단에 기하여 처신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다 할 것이다.

42) 제216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2·제200조의3·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내에서의 피의자 수사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②전항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③범행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

제217조 (동전)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할 수 있는 자의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00조의4에 규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영장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전조제1항제2호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수한 물건은 구속영장의 발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압수·수색영장의 발부를 받아야 한다.

※ 제217조에 의하여 검증한 경우 별도의 사후영장은 불요함

43) 이에 관련,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서는 정한 바가 없으며 범죄수사규칙에서는 일부 규정하고 있음

범죄수사규칙 제104조(실황조사)

①범죄의 현장 기타의 장소, 신체 또는 물건에 대하여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실황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실황조사는 거주자 관리자 기타 관계자 등의 참여를 얻어서 행하고 그 결과를 실황조사서에 정확하게 기재해 두어야 한다.

③실황조사서에는 되도록 도면과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44) 통상 공로상에서 사건현장에 관한 자연적 환경이나 물적사항을 직접 조사하여 인식하는 경우 등이 실황조사의 대상이 된다고 할.

따라서, 앞으로는 법제도의 개정을 통하여 실황조사의 법적 근거,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요건 등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수사관행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가급적 실황조사를 통한 수사형태를 삼가고 의심스러울 때는 다소 절차상 번거롭다고 할 지라도 영장에 의한 검증을 원칙적인 수사방법으로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sup>45)</sup>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판례는 위 판례<sup>②</sup>와 같이 임의적인 실황조사의 존재 자체를 영장주의의 엄격한 적용을 강조하여 부정하기보다는 “어떤 점에 있어 임의성에 의심이 있으므로 이는 영장에 의한 검증대상이기 때문에”라는 논지의 판결을 함으로써 일단 수사현실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실황조사를 적법한 수사방법으로 인정하여 주고 동시에 검증활동에 있어서 임의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준다면<sup>46)</sup>

수사의 절차와 방법을 개선·발전시키는데 크나큰 기여를 함으로써 결국 형사소송의 목적을 이루는데 한층 보탬이 되지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기대한다.

45) 동법 심회기 앞의 책 414면

46) 예를 들어,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기준(대법원 1993. 11. 23. 93다35155 임의동행에 있어서의 임의성의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 문헌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이재상, 연습 형사소송법, 박영사, 2003

백형구, 형사소송법강의, 박영사, 2001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1997

심희기, 형사소송법의 쟁점, 삼영사, 2002

이상돈, 사례연습 형사소송법, 법문사, 2001

백형구,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판례연구 4집, 1989. 3. 14

강용현,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형사판례연구 2, 1996

강용택, 형사소송법강의, 상린, 2002

임창호, 범죄수사론, 법문사, 2004

과학수사기반 구축을 위한 법의학·  
감식교육에 관한 국제적 비교연구<sup>1)</sup>

-한국, 독일, 미국, 영국, 스위스, 캐나다를 중심으로-

■ 임 준 태\*

I. 서설

오늘날 형사소송절차에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의 원칙-증거재판주의-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찰수사단계에서의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의 발견, 수집 및 보존은 실제적 진실발견과 피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강력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檢警의 수사실패(無罪判決) 및 人權侵害

(고문치사사건 등) 사례는 과학적 수사방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케 한다.<sup>2)</sup> 최근에 발생한 엽기적 살인사건처럼<sup>3)</sup> 특정범죄자에 의한 同種 혹은 類似 흉악범죄가 빈발하는가 하면, 이상심리자 혹은 정신병질자에<sup>4)</sup> 의한 범죄가 빈발하는 등 일반적인 범죄수사기법으로 해결하기에 어려운 사건들마저 증가하고 있는 경향인 바, Criminal Profiling(범죄자 유형분석기법)과 같은 과학적 수사기법의 도입·활용이 더욱 긴요해 졌다.<sup>5)</sup>

1) 同연구는 학술진흥재단 「2002년도 선도연구기지원」에 의거, 수행된 것입니다.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2) [세계일보] 2002-11-09 27면 [검찰수사 바뀌야 한다] 과학수사 도입 “조00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검찰수사가 강압적으로 피의자에게 자백을 받아내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증거 위주의 과학수사로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년 동안 유무죄를 오가는 판결로 관심을 모았던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에서 수사기관은 초동수사 실패로 현장에서 범행도구나 지문 등 결정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 이모씨를 기소했지만 이씨와 변호인은 모형 아파트를 만들어 화재실험을 하는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씨의 무죄를 증명했다.... 와룡산에서 발견된 “개구리소년” 시신 매장 현장도 과학수사 인력이 뒤늦게 출동, 증거물 확보에 실패해 사건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동아일보 2004.07.18. “11개월간 20명 ‘엽기 살인’ 30대 용의자 검거”: 지난해 발생한 서울 부유층 일가족 연쇄살인을 포함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만 모두 20여명을 살해한 최대의 살인범이 경찰에 검거되었는 바, 최근들어 추가범행 사실들이 기소단계에서 확인되고 있다; 중앙일보 2000년 04월 16일 01면 【연쇄살인 용의자 열달새 9명 살해】일명 Serial Killer라고 일컬을 수 있는 “정두영” 사건의 경우, 열달사이에 철강회사 회장 부부 등 무려 9명을 연쇄살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4) 김00양 유괴(토막)살인사건 등을 상기하면, 최근의 이러한 범죄경향을 짐작할 수 있다; [동아일보] 2001-05-30 27면 【김00양 유괴살해범 검거】 김00양(4) 납치 토막살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지난 2001년 서울동부경찰서에 붙잡혔는 데, 범인은 경찰에서 ‘취직이 안되고 돈이 궁해 윤지양 부모에게 500만원을 요구할 생각으로 00양을 유괴했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체를 토막냈다’고 말했다. 범인은 80년 작업 도중 왼손 중지와 약지가 잘려 나간 지체장애인이었다.....00양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시체를 토막내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두 차체에 걸쳐 내다 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흔히 범죄현장은 “증거의 바다 혹은 寶庫”라고 한다. 정상적인 심리상태 혹은 보통평균인의 수준에서 저질러지는 범죄라면, 수사관의 추리와 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겠지만, 이상심리자에 의한 특이한 범행인 경우, 합리적 추리가 더욱 어렵다. 뚜렷한 범행동기가 나타나지 않고 무작위·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건이 빈발하면서, 범행현장에 유류된 물적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 등으로만 수사의 방향을 추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 학회보 제3호」(용인: 한국경찰학회, 2001), 2면 이하.<sup>5)</sup>

초등단계에서의 현장관찰 및 감식, 증거수집 소홀, 전문성 부족으로 공판단계에서 결국 피고인에게 無罪가 선고되는 등 실제적 진실발견에 대한 경찰수사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급기야 특정 사건과 관련, 외국 법의학 전문가 의견이 국내 학자들의 견해를 뒤엎는 듯한 상황까지 초래된 바 있었다.” 따라서 사법경찰의 수사직무 전문성과 법의·감식분야에 대한 기초지식은 수사의 성패를 좌우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형사사건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실과학이라 할 수 있는 「법과학(forensic science) 혹은 법의학」,<sup>6)</sup> 「범죄수사학(Criminalistic)」등 기초학문의 기반이 취약하며, 「법·의과대학」, 「경찰(행정)학과」 그리고 경찰교육과정에서 관련분야 강좌마저 소홀한 실정이다. 즉 법과대학에 「범죄수사학」, 「법의학」강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경찰관련학과에서도 「과학수사」 내지 「법의학」강좌는 거의 개설되지 않고 있다.<sup>6)</sup>

5) 범죄자 유형분석기법은 다양한 사용례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른 者의 人格的 유형(타입)을 암시하는 범죄현장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라는 전제에 근거하고 있다. Jackson/Bekerian, 2001, p. 3; Douglas-Burgess 등은 “그 혹은 그녀가 저지른 범죄의 분석에 기초한 범죄자 개인의 중요한 人性과 행위 특성을 확인”하는 것; Copson은 “범죄현장, 피해자 그리고 다른 수집가능한 증거들에 대한 아주 상세한 평가를 토대로 알려지지 않은 범죄자의 묘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찰수사 활동에 대한 접근”; “범죄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의 형태(type, 類型, 스타일)를 파악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범죄행동을 搜查하고 調査하는 과정”, Turvey, 2002, x xi. [세계일보] 2002-11-09 27면 [검찰수사 바뀌야 한다] 과학수사 도입.....미국 연방수사국(FBI)의 “행동과학수사반”은 연쇄살인 등 대형사건이 보고되면 범인의 심리를 연구해 사건해결에 도움을 주는 한편 현장에 출동해 범행 당시 정황을 재구성하고 범인의 심리상태와 범인의 모습까지 유추해 수사범위를 좁혀준다. 이 같은 과학적인 수사방법은 빠른 시간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도와줄 뿐 아니라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고 있어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돼 있다.....

6)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3호」(용인: 한국경찰학회, 2001), 2면 이하.

7) 일명 치과외과사모녀 살인사건에서 그와 같은 국가적 망신(?)을 경험한 바 있다. 문화일보 1999년 10월 26일자....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지난 19일 파기환송심 5차공판에서 스위스의 세계적인 법의학자 토마스 크롬페셔르(53)교수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재역전”을 위한 반격을 시작했다. ....가장 유력한 증거에 대해 권위있는 외국 법의학자가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법원은 또다시 고인에 빠질 수밖에 없게됐다; [뉴스메이커] 99/9/23 날은 법의학 지식 사람 잡을라...치과외과 모녀 살인사건 놓고 국제 저명 법의학자들 검찰 주장 반박.....변호사 쪽의 손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졌다. 저명한 국제 법의학자들이 속속 합류하는 덕분이다....

8) 혹자는 영어식으로 「legal medicine」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으며, 독일어식 표현에 의하면, 법의학: 「Rechtsmedizin」, 법정의학: 「Gerichtliche Medizin」이다.

9) 경찰관련학과에서는 경찰실무과목으로서 「범죄수사기초이론」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경찰실무 혹은 관련분야 경험이 적은 강사가 강좌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 II. 과학수사와 용어의 구분

흔히 과학수사와 관련, 법의학·법과학·감식·범죄수사학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바, 그 개념을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법과학(Forensic Science)

현대 과학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法科學(Forensic Science)<sup>10)</sup>이라 할 수 있으며,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을 범죄수사나 재판상의 증거물에 활용하여 법관이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는 데 이용하는 학문이다.<sup>10)</sup>

즉, 감정·감식에 관한 과학을 총칭하며, 사건 및 사고와 관련된 증거물에 대하여 전문 인력이 과학적인 실험과 해석을 통하여 수사나 재판에 중요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응용과학의 한 분야로서 각종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감정하는 학문이다.<sup>10)</sup> 소송사건에 관련된 증거물을 감정하여 과학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사건해결의 관건이 될 수사자료의 발견·수집은 司法警察의 몫이다. 현장관찰을 비롯한 과학적 초동수사의 성공을 통하여<sup>10)</sup> 형사 사법기관(특히 경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필자는 경찰 수사 업무의 전문화·과학화에 기여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기초학문 발전을 위한 대학교육 및 경찰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과학적 수사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한국 수사경찰의 실태와 문제를 실무현장 중심으로 확인하고,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하여 선진 각국의 경찰 및 관련 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법의감식교육 실태, 전문가 양성과정 및 인사관련분야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하였다. 특히 독일, 미국, 영국, 캐나다 현지 경찰관계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관련문헌과 인터넷 자료를 입수하여 활용하였다.

10) [세계일보] 2002-09-30 22면: 경찰, 마구잡이 삼질로 유골발굴/死因밝힐 결정적물증 훼손...개구리소년 유골이 처음 발견됐을 때 경찰이 사망원인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현장을 마구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비상식적인 초동조치 때문에 타살 여부를 가릴 수 있는 결정적 단서를 놓쳐 경찰 수사가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다.....

11) Forensic은 고대 로마시대의 Forum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많은 사람이 모여 상거래를 하거나 논쟁을 하는 장소였다가 근래 들어 공개토론회의나 법정, 재판소의 의미로 통용되고 있다. Forensic은 사전적 의미로 “법정변론을 위한”, “토론의” 등의 의미를 갖는 형용사로서, Forensic Science는 법정변론을 위하여 이용되는 과학, 즉 법정과학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된다고 한다. 동일 유명찬, 「법과학과 수사」(서울: 현암사, 2002), 22면.

12) 유명찬, 2002, 22면 이하.

13) <http://www.kifos.com/tos/fos.htm.html>.

지원하는 바, 재판과학(裁判科學) 또는 감정과학(鑑定科學)이라 일컬어지기도 한다. 법과학은 국가마다 분류가 다르지만 크게 법의학과 협의의 법과학으로 분류한다.<sup>14)</sup> 보통 법과학 또는 범죄감식과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sup>15)</sup> 법과학분석 내용에는 증거물확인(identification), 증거물의 개별화(individualization), 원인규명(determination of cause) 그리고 범죄의 재구성(reconstruction)이 포함된다.<sup>16)</sup>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과학분야 업무들이 제시되고 있는 바, 독극물·부정의약품·부정식품·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초·환각물질·화공약품·섬유·토양·페인트·부정유류·중금속·총기·화약류·화재·폭발사고·기계·구조물안전사고·음성분석·교통사고 감정 등이다.<sup>17)</sup>

## 2. 법의학 (forensic medicine, Rechtsmedizin)

法醫學은 '법률의 시행과 적용에 관련된 의학적 또는 과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거나 감정하는 의학의 한 분야'이다. 서유럽에서는 1249년 이탈리아의 외과의사 후고 v. 루카가 재판관의 명령으로 법의 감정(法醫鑑定)을 행한 것이 시초이다.<sup>18)</sup>

법의학(Rechtsmedizin)은 法廷醫學(gerichtliche Medizin)이라고도 일컬어지며, 醫學의 오랜 한 전문분야에 속하며, 범죄 수사학과 함께 공동의 임무를 통하여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sup>19)</sup>

법의학에 관한 개념정의는 이 두 가지 학문분야(법의학과 범죄수사학)간의 관련성을 명확하게 해준다: 법의학은 의학적 학문 분야인데, "법의학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사실관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론(Lehre)·연구(Forschung) 그리고 실무(Praxis) 속에 의학적 지식과 방법의 응용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sup>20)</sup> 법의학자(법의학을 위한 전문의, 법정의학자 그리고 법정의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는 醫師이다.<sup>21)</sup> 법의학자는 의학교육 프로그램에 입학하여 수년 동안 전문의사가 되기 위한 폭넓은 교육을 이수한 것이며, 또한 주무기관인 의사협회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이다. 전문지식을 근거로 법의학자는 경찰이나 法院에 대하여 전문감정인으로서

14) 유영찬, 전제서, 22면. 협의의 법과학은 법의학 이외의 분야로서,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증거물을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15) 자연과학의 이론과 기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활용하는 범죄감식과학분야로서, 주로 분석대상인 증거물에 대하여 법생물학, 법이화학, 법이공학, 문서감정학, 거짓말탐지학, 유전자감식학 기타 특수기술분야로 나눌 수 있다.  
16) 유영찬, 전제서, 30면 이하.  
17) <http://www.nisl.go.kr/>  
18)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front&p=%B9%FD%C0%7C7%D0>.  
19) Wirth/Strauch, Rechtsmedizin, 2000, p. 1.  
20) Schwerde, W.(1989): Gerichtliche Medizin und Kriminalistik, Zeitschrift Rechtsmed. 102: 423 Wirth/Strauch, 2000, p. 1에서 재인용.

활동하기도 한다.<sup>22)</sup>

즉 법의학은 법률상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재판의학 또는 감정의학(鑑定醫學)이라고도 하며, 영·미에서 말하는 Forensic Medicine, Legal Medicine, Medical Jurisprudence, 독일의 Gerichtliche Medizin, Rechtsmedizin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법의학은 범죄수사나 사법재판상에 필요한 각종 증거물에 대하여 의학적 감정을 시행하는 응용의학의 한 분과이다.<sup>23)</sup> 치료의학이 사람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소위 생명존중의 의학이라면, 법의학은 사람의 권리가 억울하게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 권리를 옹호하는 권리존중의 의학이라 할 수

있다.<sup>24)</sup>

법의학은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sup>25)</sup> 법의혈청학(forensic serology),<sup>26)</sup> 임상 법의학(clinical jurisprudence)의 <sup>27)</sup> 세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變死사건에서<sup>28)</sup> 시체부검 등으로 의학적 증명을 하는 법의 병리학분야와 범죄에 관한 심리적·정신의학적 분야를 다루는 법의정신의학적 분야로 나누기도 한다.<sup>29)</sup>

법의학은 형사상 문제에 가장 많이 이용된다. 즉, 變死者에 대한 검안·부검 및 법의학적 증거물의 檢査로 살인·상해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제공받아 범인색출, 罪의 유무 판정, 刑量의 결정 등에 응용된다.<sup>30)</sup> 이처럼 법운영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21) [동아일보] 2004-04-12 21면.....? 서울에서만 한 해 4000여건의 변사가 생기지만 3000여건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검안서 한 장으로 사건이 종결된다?...사인이 불명확한 주검은 전문가의 검안 없이 훼손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현재 30여명뿐인 법의 전문의를 최소한 200명으로 확대해야 한다.....

22) Wirth/Strauch, 2000, p. 1.

23) 우상덕, 「법의학」(서울: 최신의학사, 1987), 1면 이하. 법의학은 법률의 적정한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 이에 필요한 의학적 사항을 연구하고 또 감정에 응용되는 학문이며, 형사 사건에 있어 生體檢査·屍體檢査·物體檢査·現場檢査 등에 의하여 死因 등의 증거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수사·재판의 자료를 제공하며 민사 사건에 있어 혈액형에 의한 친생자 감정, 업무상 재해 판정,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일상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분쟁의 해결에 도움을 주는 등 수사 및 재판의 과학화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의 치안 유지와 인권옹호에 공헌을 하고 있는 응용의학의 한 부문이다.

24)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934>.

25) 법의병리학이란 병사(病死) 이외의 모든 죽음, 즉 외상·질식, 이상온도 및 기압에 의한 장애, 기아(飢餓) 중독·주산기사망(過産期死亡), 학대아(虐待兒)·천대아(賤待兒), 정신이상, 성범죄 등에 의한 외인사(外因死:violent death)와 평소에 건강하게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예기치 않게 사망하는 경우, 즉 그 사망이 어떤 질병 또는 신체 내부의 이상에 기인하는 소위 내인성 돌연사(sudden unexpected natural death)인지 또는 그 사인을 알 수 없는 사인불명례(死因不明例)인지를 알기 위하여 검안 또는 부검을 실시하여 사망의 종류·사인·사후 경과시간·치사방법·사용총기 및 사용독물 등을 규명하는 학문을 말한다.

26) 법의혈청학은 혈액·타액·정액·질액·모발·치아 및 골격 등 인체의 분비물 또는 조직을 재료로 한 혈액검사를 중심으로 혈청형 백혈구형(HLA 型)·타액형·지문분류·모발분류 및 인류학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 개인을 식별함으로써 범인색출 친생자감정(親生子鑑定) 등에 기여하는 학문을 말하며, 일명 과학수사학 또는 감식학(鑑定學)이라고도 한다.

27) 임상법의학은 의료사고가 일어난 경우에 질병 또는 손상과 死因과의 관계, 의료행위와 사인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의료행위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학문이다.

28) 외인사와 사망의 종류를 판별할 수 없는 불명의 경우 등을 합하여 變死라 칭한다.

29) 유영찬, 전제서, 23면.

3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934>.

만큼 고도로 숙련된 경험과 과학적 지식이 요구된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범죄수사 및 형사재판에 관한 증거물에 대한 법의학분야 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사체부검·검안, 병리조직 검사, 혈흔, 정액, 타액, 모발, 배설물, 유전자분석, 슈퍼임포즈, 플랑크톤, 범죄분석, 범죄면, 거짓말 탐지, 인영, 영상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다.<sup>31)</sup>

법의학부에는 법의학과, 생물학과, 범죄심리과, 문서사진과 등이 설치되어 있다.

### 3.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犯罪徵證學)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형법(Strafrecht) 혹은 형사법(Kriminalrecht)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범죄수사학이 법학적 문제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독일대학에서는 법학의 한 분야로서 취급되어 왔다.<sup>32)</sup> 실제로 이 분야에서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사람은 다음 아님 Paul Johann Anselm Ritter von Feuerbach(1775 ~ 1833)라는 학자였다. 동인은 법철학자로서, Ansbach라는 지역의 향소법원장으로서 그리고 형사학자로서 근대 독일형법학 이론에 큰 업적을 남겼다.<sup>33)</sup> 그는

31) <http://www.nisi.go.kr/>

32) Weihmann, Kriminalistik: Ein Grundriss fuer Studium und Praxcis, 1996, p. 18.

33) Weihmann, 1996, pp. 18-19.

34) Weihmann, 1996, p. 23.

“법률없으면, 형벌없다(nulla poena, sine lege)”라는 죄형법정주의 문언을 만들기도 했다. 그리고 범응용의 한 방법으로서 범죄수사학을 활용하였는 바, 이와 같은 실증주의적 증거법원칙들이 규문주의 소송절차에서 활용되었다.

학문으로서 범죄수사학의 위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논쟁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범죄수사학은 특히 범죄학과 형법과의 관계에서 논해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형사정책(Kriminalpolitik), 형법(Strafrecht), 범죄학(Kriminologie) 그리고 범죄수사학이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즉 ① 형법은 구성요건(Tatbestaende)을 규정하고, 책임(Schuld)을 결정하고, 소송절차를 확정한다. 그리고 행형(Stravollzug)을 규정한다.

② 범죄학(Kriminologie)은 범죄발현 형태를 설명하고, 그러한 원인에 대한 설명을 제공한다.

③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범죄방지(Verbrechensverhuetung)와 증거발견(Beweisfindung)·증거보전(Beweissicherung) 그리고 입증(Beweisfuehrung)을 통한 형사범소추의 방법을 제공한다. 범죄수사학은 자연과학 및 정신과학을 활용한다.<sup>34)</sup>

### 4. 감정·감식

법과학 감정·감식은 특수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과학 전문가가 그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실과 그 사실로부터 얻은 판단을 법원 또는 범죄수사기관에 제공하는 측면에서 소송법상의 감식에 속하나, 일반적으로 과학지식과 기술을 이용하는 것만을 국한하여 과학수사에서의 감정·감식이라 한다.<sup>35)</sup>

#### 1) 감정(Expert evidence)

鑑定이란 소송의 제3자가 특별한 지식 경험에 속하는 법칙 또는 이에 바탕을 둔 원리에 입각하여 구체적 사실의 판단을 하는 것을 말한다.<sup>36)</sup> 감정인이란 法院에 대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를 공술하거나 서류로써 제출하는 제3자를 지칭하며, 법원이 명하는 수도 있고, 수사단계에 있어서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위촉(촉탁)하기도 한다.

刑事訴訟法 제169조에 “법원은 학식 경험있는 者에게 감정을 명할 수 있다”, 同法 제221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者에게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民事訴訟法 제306조에는 “감정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者는 감정의 의무가 있다.”

#### 2) 감식(identification, Identifizierung)

鑑識이란 아직 감정에 이르기 前에 술선해서 범행현장에 대한 사진촬영, 지문채취, 범행과 관계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체에 대하여 증거물의 수집, 가치판단 및 그 檢査를 행하고, 범죄의 특징을 판단하는 등 광범위에 걸친 검사, 식별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sup>37)</sup> 현재는 경찰의 수사담당 및 감식담당직원이 행한다.<sup>38)</sup>

특히, 범죄감식의 경우 자연과학·정신과학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sup>39)</sup> 조직적인 시설 자료를 활용하여 범죄사실을 밝히고 방증을 수집하는 방법이다.<sup>40)</sup>

35)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36) 이상덕, 전게서, 16면 이하.

37) 이상덕, 전게서, 18면.

38) 일선경찰관서의 “과학수사계(과거 감식반)” 소속 수사경찰관이 우선적으로 맡고 있다.

39) 과학적 지식·기술인 이화학(理化學)·전기학·법의학·사진술·심리학 등을 응용하는 방법과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분류·보관하였다가 대조하는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으며, 혈흔·정액·모발·종기·탄환·화약류·기계류·독물·약품·유류·섬유류·착색료(着色料)·금속류·토양·사진·문서·도화·족흔적(足痕跡)·음성·증언 등이 이용된다.

4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4406>.

### 5. 과학수사

현대사회의 범죄(犯罪)는 신속화·광역화·홍포화해지는 반면에 도시화·산업화, 인구증가에 따른 개인주의 및 익명성의 증가로 인증(人證)의 확보나 탐문에 의한 자료의 수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과학수사를 통한 명확한 물증(物證)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범죄의 다양화·지능화를 수반하고 있어 그에 따라 수사방법도 과학화되어야 하므로 결국 과학기술이 진보된 사회에서는 과학수사가 보편적인 수사방법이 된다. 科學搜查는 수사의 모든 단계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특히 범인의 식별(identification), 증거의 수집분석등 수사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결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학수사란 무엇인가?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종래 과학수사는 감정·감식을 지칭하는 의미로만 통용되기도 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수사방법의 개선을 위한 의미로 과학적 방법을 이용하거나, 과학적으로 행하는 모든 수사를 의미한다.<sup>41)</sup> 일반적으로 범인의 발견과 범죄증거를 수집함에 있어서 과학적 지식과 과학기재 및 시설을 이용하여 합리적·조직적으로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방법을 말한다.<sup>42)</sup>

흔히 개인적 직관력·짐작 혹은 感에 의존하는 이른바 六感수사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다. 이와 같은 과학수사는 “과학을 이용한 수사”와<sup>43)</sup> “수사방법의 과학화”로 대별된다. 본논문에서는 주로 소위 “과학을 이용한 수사” 기법에 대한 수사경찰관의 직무 전문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 1) 과학을 이용한 수사

##### (1) 과학적 지식의 이용

이학·화학·물리학·생물학·(법)의학·약리학·기계공학·전자공학·전기공학·정보공학·광물학·토양학·곤충학·섬유학·식품가공학·기상학·건축학 등의 자연과학분야의 지식은 물론이요, (범죄)심리학·사회학·논리학·통계학·회계학·음향학·음악학·체육학·철학 등의 인문·사회과학을 모두 포함하는 모든 분야의 과학적 지식이 이용된다.<sup>44)</sup>

##### (2) 감식기재 등의 이용

수사자료의 검출·채집·감별 등을 위한 감식기재·재료와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41)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42) 이삼재, 『科學搜查入門』(서울: 정문출판사, 1983), 15면.

43) 과학적 지식·기술을 이용하여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과학적 기술의 이용은 감식기재·감식기술의 이용을 뜻한다.

44) 이러한 측면에서는 법과학(Forensic Science)과 법의학(Forensic Medicine)은 쉽게 구분이 되면, 법과학이 넓은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범죄감식(Forensic Identification)은 법과학적, 법의학적 지식을 활용한 수사방법이라 할 수 있다.

### III. 증거재판주의와 과학수사

#### 1. 증거재판주의와 수사의 중요성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되는 구체적 법률관계는 사실관계의 구체적인 파악을 전제로 한다.<sup>45)</sup> 사실관계의 확정, 즉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는 것은 형사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바, 범죄사실의 인정은 證據(Beweis)에 의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 307조). 실제적 진실발견을 이념으로 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관의 자의(Willkuer)에 의한 사실인정은 허용될 수 없으며, 반드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형사소송법은 證據裁判主義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공식적으로 증거가 제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sup>46)</sup> 법원은 모든 증거방법(Beweismittel)의 가치를 드러내어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실제적 진실발견이라는 형사소송 절차의 이념을 달성하고, 증거재판 원칙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증거수집활동이 과학적·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형사소송절차의 일환인 수사(Ermittlung, investigation)란 범죄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의 제기와 유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즉

수사활동에 이용되고 있다. 지문감식, 화재감식, 혈액·모발·땀 등의 감식, 정액(精液)·타액(唾液)·땀 등 분비물의 감식, 총기·탄알의 감정, 문서·필적·인영(印影)의 감정, 잠재지문·축흔적·윤적(바퀴흔, 輪跡)·혈흔의 검출 등을 위한 기기 및 재료, 자타살의 감별, 거짓말 탐지기활용, 슈퍼임포즈, DNA분석기법 등이 개발되어 있다.<sup>45)</sup> 특히 이러한 전문적인 감식 기법 활용 및 장비조작에 대한 교육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 2) 수사방법의 과학화-과학적으로 행하는 수사

수사법칙에 따른 수사를 진행하고, 行態研究, 犯罪手法分析)등 수사에서의 합리성·타당성을 추구하는 것이다.<sup>46)</sup> 즉 합리적·조직적으로 행하는 수사를 말한다. 오늘날에는 컴퓨터의 활용으로 지문원지, 수법원지 등의 집중적인 관리와 각종 조회 및 수배, 공조제보 등의 제도를 갖추어 수사의 과학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조제도를 활용한 조직수사는 과학수사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조직수사체계의 완비와 효율화가 더욱 긴요시 되고 있다.

45) 이삼재, 전제서, 16면.

46)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7570>.

47) 이재상, 『형사소송법』(서울 박영사, 1999), 447면.

48) Weiland, Bernd, Einguehrung in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s. Aufl, 1996, p. 111.

치안 논단 5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해 필요한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검사, 사법경찰)의 활동을 말한다.<sup>49)</sup>

捜査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 "Investigation"은 다양하게 개념정의되고 있다.<sup>50)</sup> 예를 들면, investigate의 어원은 "토론하다, 논의하다, 음미하다(discuss)" 그리고 "조사하다, 탐구하다, 찾아내다(explore)"와 동의어라고 하며, 명사형인 Investigation은 "토론(discussion)", "탐구(research)"라는 말에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Webster 사전에 의하면, "찾다, 조사하다(to search into); 상세하게 조사하다(examine in detail); 체계적으로 조사하다(inquire into systematically)"라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수사는 경찰의 주요한 기능이며, 수사 절차의 기본적인 목적은 완전하고 공평한 조사를 통하여 범행현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2. 대표적 수사실패 사례와 교훈

본항에서는 형사소송법상 대단히 중요한 판결이 선고되게 한 사건에서, 장장 8여년

간의 법정공방을 거쳐 無罪로 확정된 최근 사건에 이르기까지 경찰의 수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몇몇 사건들을 주로 소개한다.

이들 사건들 중에는 다행히 眞犯이 체포되어 억울함이 해소된 경우도 있으나, 2003년 11월 현재까지 未濟사건으로 남은 것도 있으며, 급기야 영화의 소재로 선정되어 엄청난 관심을 불러일으킨 경우도 있다. 초등수사단계에서의 지켜져야 할 과학적 수사방법에 의한 증거수집, 이를 토대로 한 범인의 특정, 적법절차준수를 통한 인권 침해방지라는 기본원칙을 더욱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1) 화성연쇄살인사건

(1) 사건개요

86년 9월15일 오전6시20분쯤 수원에서 열무를 판 뒤 딸집에서 잠을 자고 귀가하던 이00(71)씨가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목초밭 짚더미에서 실종 닷새만에 성폭행 당한 채 발견됐다. 부녀자만을 노리는 엽기적 연속 범행과 5년 이상 범인을 검거하지 못한 채 미궁에 빠진 경찰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49) 이재상, 1999, 169면, 한편, 미국의 경찰학자인 O.W.Wilson은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경찰이 범인을 확인 체포하고 범죄자를 기소할 수 있도록, 증거를 발견·수집·보전·평가하는 절차"라고 정의하고 있다. O.W. Wilson, et al., Administration(New York et al.:McGraw-Hill Companies, Inc., 1997), 5th Ed, p. 596.

50) Burstein, Harvey, Criminal Investigation An Introduction(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p. 22.

것이였다. 86년 한 헛 동안 반경 1km 이내에서 발생한 부녀자 성폭행 살해사건만도 무려 네 차례나 됐다. 주춤하던 살인사건의 망령이 되살아난 것은 88년 9월7일 안00(52)씨가 러닝셔츠로 목이 졸리고 흉기로 난자 당한 시체로 발견되면서부터다. 같은 해 9월16일 박00(당시 13)양이 안방에서 강간당한 채 살해된 뒤 용의자가 검거돼 해결의 실마리를 보였던 연쇄살인 사건은 이를 비롯듯 90, 91년 잇따라 중학생과 60대 부녀자 성폭행 사건이 벌어져 주민들을 경악케 했다.<sup>51)</sup> 1차 사건을 제외하고 모두 강간 피살되였다. 한편, 무고한 부녀자 10명이 희생돼 「얼굴없는 범행」으로 각인됐던 화성연쇄 살인사건 이후 5년여 만인 1996년 11월 3일에 다시 화성 인근지역에서 같은 수범의 살인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11차 사건).<sup>52)</sup>

(2) 경찰수사의 실패 및 물의야기

10차례 연쇄사건의 범인을 잡기 위해 경찰이

쏟아 부은 인력은 정식 수사인력만 무려 30만 명 이상. 여기에 방법순찰대·민간기동대 등 1백29만명을 합할 경우 1백80만 명이 범인의 뒤를 쫓아왔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1차 사건부터 범인 검거는 고사하고 윤곽도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그동안 「여자에 굶주린 정신도착자」에 주안점을 두고 용의자 18,000여 명을 수사했다. 경찰은 지문과 유전자 감식 의뢰만도 4만여 건을 하는 등 의욕을 보여 왔으나 용의자에 대한 자백강요, 가혹행위 등의 무리수를 두는 등 오점을 남겨왔다. 경찰은 「연쇄사건이 대부분 야산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한밤중에 발생해왔으며 부녀자를 성폭행한 뒤 입고 있는 블라우스 등 옷가지로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유기해왔다」며 물증 미확보를 미궁에 빠진 수사의 주원인으로 돌려왔다.

한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강압과 인권침해에 의존한 경찰의 무리한 六感수사가 한 시민과 가족을 파멸로 몰아넣기도 하였다.<sup>53)</sup> 화성사건이 처음 일어난 86년 9월 이후 1993년

51) 중앙일보 1996년 11월 04일 22면. 1차=86년 9월19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풀밭에서 이00씨(71)가 하의가 벗겨진 채 목졸린 시체로 발견. 2차=86년 10월23일. 태안읍 진안리 농수로에서 박00씨(25)가 양손이 뒤로 묶이고 스타킹으로 목졸린 채 발견. 강간 흔적. 3차=86년 12월21일. 이00씨(22)가 약혼자를 만나고 오다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리 논두렁에서 스타킹으로 목졸린 채 발견. 머리에 팬티 씌움. 4차=87년 1월11일. 흥00양(18)이 태안읍 황계리 논에서 입에 재갈이 물리고 양손이 뒤로 묶인 상태에서 목도리로 목졸린 채 발견. 우산 손잡이로 음부 난행. 5차=87년 4월23일. 권00씨(25)가 태안읍 안녕리 공장 옆 냇물 밑에서 브래지어로 양손이 묶인 채 발견. 6차=87년 5월9일. 박00씨(29)가 남편 마중 갔다가 태안읍 진안리 야산에서 브래지어·내의·블라우스로 세 차례 목졸린 채 발견. 7차=88년 9월8일. 안00씨(54)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 농수로에서 블라우스로 목졸린 채 발견. 음부에 복숭아 조각 삽입. 8차(범인 검거)=88년 9월16일. 박00양(14)이 태안읍 진안리 집에서 잠자다 목졸려 살해된 채 발견. 남자 체모에서 티타늄 원소 검출. 9차=90년 11월16일. 김00양(14)이 태안읍 병점5리 석재공장 뒤 야산에서 목졸린 채 발견. 음부에 볼펜·손가락·포크 삽입. 10차=91년 4월4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반송리 야산에서 권00씨(69)가 하의가 벗겨지고 스카프로 목졸린 채 발견. 음부에 양말 삽입.

52) 중앙일보 1996년 11월 4일 22면.

53) 중앙일보 1993년 08월 04일 (초점) 화성용의자 자살기도, 경찰 무리한 수사관행이 원인"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범행을 자백했던 용의자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경찰이 아직도 무리한 수사의 악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자살을 기도한 김중경씨(41)가 자백을 할 경우 극형을 선고 받을지도 모르는 엄청난 사건의 범인도 아니면서 허위자백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처했던 것으로 미뤄보면 그동안 철저하게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했다는 경찰의 주장이

8월까지 경찰에 용의자로 몰려 가혹행위를 당하고 허위자백을 강요받은 피해자는 김00씨를 포함해 모두 6명. 특히 90년 12월 18일 경찰조사를 받았던 차00씨(당시38)는 무혐의로 풀려난 지 4시간만에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며 달리는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하기도 했다. 6차 사건 발생 일주일 후인 87년 5월 10일에는 홍씨가 피살자 가운데 빨간 옷을 입은 여성이 많은 것을 빚대 화성군의 한 다방에서 종업원에게 “빨간 옷을 입으면 죽는다”는 말 한마디 했다가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은 뒤 3, 4, 6차 사건범행을 자백했으나 연행 7일만에 무혐의 석방됐다.

이밖에 문모, 박모씨와 윤모군(19)등도 연행돼 각각 1~2건의 범행을 “자백”했으나 변호인 접견과정 등에서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라고 진술을 반복해 석방되기도 했다.<sup>54)</sup> 그러나 이들은 다행히 무죄 방면됐지만 하나같이 고문의 심한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경찰의 강압수사 관행과 인권침해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양산했던 상황을 돌이켜보면, 경찰은 이를 깊이 반성하고 과학적 수사관행 정착에 더욱 더 매진해야 한다.

2) 김시훈사건

피고인 김시훈은 살인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된 후 처음에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別件으로 선고받은 구류형의 집행 중 수사경찰관의 강요에 못 이겨 살인의 범행을 자백하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였으며, 항소법원은 그 진술서에 기재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여 이를 결정적 증거로 삼아 피고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상고에 의해서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 眞犯人이 검거되어 구속 기소되자 대법원은 原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면서 全員合議體判決로써 피의자진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중전의 판례(형사소송법 제313조설)를 변경하였다.<sup>55)</sup> 同판결은<sup>56)</sup> 대법원이 피고인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피의자진술서(형사소송법 제313조)”를 “피의자신문조서(동법 제312조)”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 사건은 경찰의 잘못된 수사관행으로 인하여 “被疑者가 作成한 陳述書의 證據能力”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변경시켰다는 점에서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허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씨에 대한 수사는 서울서대문경찰서가 이 사건과 전혀 관계 없는 심령술사 김모씨의 단순한 영감에 의해 떠오른 인물을 지목하면서 착수됐다. 사건현장에서 수집한 단서로부터 용의자를 추적하는 정상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원시적인 이 같은 사건 수사는 출발부터 상식을 초월한 년센스에서 비롯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능력도 크게 의심케 하고 있다.

54) 중앙일보 1990년 12월 20일자.

55) 백형구, 『刑事訴訟法講義』(서울: 박영사, 1994), 663면.

56) 대판 1982.9.14, 82도 1479(全合)(김시훈사건)[공보 692호 980면].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2) 사건의 쟁점과 교훈

무엇보다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법의학적 소견이다. 김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을 보이는 증거도 있기는 좀 있었지만 검찰이나 법원 2심까지 이 증거들은 인정되지 않았다. 여러 가지 증거 중에서도李양 시신의 시강이 전신에 나타난 점, 胃속 내용물의 소화정도, 直腸(직장)온도, 시반이 뚜렷한 점 등 법의학 소견이 유죄 판단에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말로 일어나기 힘든 공교로운 우연들이, 김씨로서는 확률이 지극히 낮은 불운한 惡運(악운)들이 겹치고 겹쳐서 범인으로 단정된 것이다. 검찰은 현장 감식을 위해 출동했던 서울경찰청의 K모 반장이 경험 미숙으로 시강이나 시반, 직장온도 측정 등을 서툴게 했던 것으로 판단했다. 사망 시각을 추정하는 것이야 법의학자들이 하는 일이지만, 그 추정의 근거가 되는 기초 자료는 결국 초동수사를 통해 내놓는 감식팀의 의견이다.

그러니까 감식팀이 미숙해서 틀린 자료를 법의학자들에게 入力하게 되면 出力, 그러니까 법의학적 판단도 틀리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법의학적 추정이라는 것을 단순한 참고 자료를 넘어 전적으로 신뢰할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이

3) 김기웅순경 사건<sup>57)</sup>

(1) 사건 개요

1992년 11월29일 아침 서울 관악구 某여관 203호에서 18세의 카페 종업원 李모양이 목이 졸려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신고한 사람은 그 날 새벽 3시반 쯤 李양과 이 여관에서 함께 투숙했던 김씨였다. 김씨는 오전 7시쯤 혼자 여관을 나가 인근의 직장에 출근했다가 오전 10시쯤 李양을 깨우기 위해 여관방에 돌아와 보니 李양이 숨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씨는 범인으로 지목돼 구속됐다.<sup>58)</sup> 경찰 수사과정에서 한 때 자신이 범인이라고 自白까지 했지만, 자백을 번복하고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던 김씨는 1992년 말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결국 유죄가 인정돼 1993년 1심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던 1993년 말 수감 중 眞犯人이 체포되었다. 진범이 잡힌 후인 1994년 1월 26일, 대법원은 K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無罪 취지로 파기했다.

57) 同내용은 월간조선 1999년 2월호[심층주적: 치과 의사 모녀 살인사건 수사와 재판의 드라마]내용을 요약, 소개한 것이다.

58) 검찰이 내세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그는 숨진 李양과 함께 투숙한 사람으로 밤새 같이 있었다. 오전 7시에 나간 것은 인정되지만, 직장에 나갔다가 여관방에 李양이 있는지 전화로 확인도 해보지 않고 구태여 李양을 깨우기 위해 10시에 돌아왔다는 게 어색하다. 또 李양이 결혼해달라고 졸라 갈등이 있었고, K씨가 李양이 뱀 자신의 아이를 낳게 한 사실까지 있는 K씨가 여관을 나간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여관에 들어온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관 문이 아닌 창문 등으로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은 없다. K씨는 투숙 당시 여관 주인에게 아침 8시에 인티폰을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주인이 실수로 7시에 인티폰을 했지만 K씨는 즉시 응답했다. 그가 이미 깨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

사건은 주고 있다.

만약 대법원에서 김씨에게 有罪확정 판결을 내렸는데 그 후에 진범이 잡혔더라면 이 사건은 법원으로서 [稀代(희대)의 誤判(오판)]으로 남았을지 모른다. 同사건을 반성하는 의미에서 1994년 대검 강력부는 [K씨 사건을 계기로 본 강력 사건의 수사상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1백23페이지 짜리 소책자까지 만들기도 했다.

4) 치과의사모녀살해사건

(1)사건개요

① 사건발생 및 피의자 긴급구속

1995년 6월 12일 오전 8시40분~9시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소재의 M APT 〇동 7××호 안방에서 원인 모를 화재 발생. 주민의 신고(오전 9시24분)로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안방 장롱 안에서 난 불은 장롱일부와 옷장과 커튼과 벽지 일부만을 태운 후 거의 꺼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화재 수습 후 소방관에 의해 부인 최00씨(치과의사)와 한 살 박이 딸 00양 등 두 명이 화장실 욕조에 숨진 채로 발견되었다.<sup>59)</sup> 경찰에서는 이 집의 가장인 이00씨와 J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

59) <http://org.catholic.or.kr/chrc/t-main2-1.htm>.

60) ▲의부침입 흔적이 없고, ▲부검 및 거짓말 탐지기 반응결과 사망추정시간이 오전 4시로 추씨가 출근하기전이었으며, ▲화재발생 시각도 오전7시 전후로 나타난 점을 들었다.

61) 한국일보 2003-02-27 (사회) 29면.

62) 조선일보 96/6/26.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가지 않는 엄격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하기 시작했다. 그 후 국내 부검의의 법의학 소견서를 근거로 오전 7시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다.<sup>60)</sup>

이를 근거로 1995년 9월 2일 同사건의 범인을 남편인 이00씨로 결론짓고 이씨를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혐의로 구속했다.

② 재판과정 : 死刑에서 無罪로

1심 死刑, 2심 無罪, 대법원의 有罪 취지 파기환송, 항소심의 두 번째 無罪, 그리고 검찰의 再上告로 이어지는 엇갈린 판결 끝에 자유인이 됐다.<sup>61)</sup>

▷1심 : 死刑宣告

1심 재판부인 서울지법 서부지원(합의부)은 1996년 2월 23일 이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인정한 증거는 법의학자들의 감정에 의한 사망추정 시간이었다.

▷2심 : 無罪

서울고등법원은 1996년 6월 26일 "추피고인이 살인을 저질렀다는 의심은 가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無罪를 선고했다.<sup>62)</sup> 변호인단은 잘못 인정된 화재 발견 시각 및 사망 추정시각을

방대한 자료검토와 외국 법의학 저서들을 근거로 하여 검찰 증거의 불확실성을 증명해 냈다.<sup>63)</sup> 1996년 7월 서울고검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3심(대법원): 고등법원의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대법원은 1998년 11월 13일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sup>64)</sup>

▷4심(고등법원): 無罪

2001년 2월 17일 피고인은 환송심(고등법원)에서 다시 無罪를 선고받았다.<sup>65)</sup> 검찰은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再上告하였다.

▷5심(대법원): 무죄확정(2003년 2월 26일)

대법원은 2003년 2월 26일 이 사건의

피고인의 유죄를 추징케 하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으나 모두 증명력에 대한 의문이 있고 그밖에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러 정황들도 있으며 직접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없어 無罪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63) 중앙일보 1996년 07월 01일 23면: 齒醫모녀 살해사건 '무죄' 1등공신은 인터넷- 추씨 변호인단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1천여 의학전문에서 검찰측 주장을 무력화시킬 자료들을 찾아낸 뒤 이를 재판부에 증거물로 제출해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64) 중앙일보 1998년 11월 14일 31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간접증거가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6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주검의 강직(시강)과 반직(시반)에 대한 국내 법의학자들의 소견을 근거로 사망 추정시간이 이씨 출근 전인 7시 이전이라고 주장하나, 법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시강 등을 기초로 한 사망시각 추정에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주위환경과 사람에 따라 시강과 시반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사건 발생이 7시 이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파트 방화시간을 두고서도 "검찰은 일러도 아침 8시40분에 아파트 경비원에 의해 발견된 아파트 안방 화재가 범인의 지능적인 지연방화에 따라 늦게 발견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화재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화재 발생 예상시각인 7시 이전에 발생한 화재가 이처럼 늦게 발견된 것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6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有罪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고, 정황 증거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더라도,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67) 동내용은 월간조선 1999년 2월호에 게재된 [심층추적: 치과의사 모녀 살인사건 수사와 재판의 드라마]에서 소개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再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sup>66)</sup> 치과의사 모녀를 살해한 범인으로 몰려 8년간 재판을 받아온 피고인에게 無罪가 최종 선고된 것이다.

(3)초동수사상의 문제점과 <sup>67)</sup> 교훈

① 초동수사 과정의 문제점들

▷ 사망한 최씨의 손톱을 잘라두지 않은 것이다. 손톱을 잘라두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라는 법의학자도 있었는데, 감식팀이나 剖檢醫는 이를 소홀히 한 것이다.

▷ 부검 과정에서 여러 각도의 사진을 찍어두지 않은 것도 큰 결함이다.

양측성 屍斑과 관련, 여러 각도의 시신 사진을 찍어두었다면 최씨 시신 앞부분에 얼마나 시반이 형성돼 있었는지 자료를 남길



수 있었고, 그랬다면 崔씨 시신에 양측성 시반이 생겼는지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이 필요 없었다.

▷ 현장 감식 과정에서 시신의 直腸(직장) 온도를 재 놓지 않았다.

直腸이란 大腸(대장) 말단부로 항문에 이르는 부분이다. 직장온도는 항문에 체온계를 집어 넣어서 측정하게 된다. 시신의 직장온도는 사망 직후부터 꾸준히 하락하므로 사망 시각 추정에 중요한데 재놓지 않았다.

▷ 鑑識 당시 시신이 담겨 있던 물의 온도도 재 놓지 않았다.

물의 온도는 시각, 즉 시체의 경직에도 큰 영향을 주지만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는 원래 급탕 공급되는 온도와 의 차이를 통해 범인이 물을 틀어 욕조에 받은 시각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은 화재가 발생한 안방의 손잡이 온도도 재놓지 않았다가 후일 손잡이를 잡았던 경비원의 기억에 의존, 추정 온도를 산출해 기록으로 제출하기도 했다.

▷ 崔씨의 직접 死因인 시신 목 부위의 물질 채취에 소홀했다.

끈에 강하게 졸렸던 목 부위에 붙은 물질을 잘 채취해 조사했다더라면 범행에 사용된 끈의 성분 등을 알아낼 수 있었을 것이다.

② 교훈

이른 바 한국판 'OJ 심슨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을 둘러싸고 장장 8여년간의 법정 공방이 벌어진 가운데, 결국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특히 사망시간 등에 대한 국내 법의학자들의 감정결과와 '추정' 만 가능한 정황 증거의 신뢰성을 둘러싼 공방은 법의학, 검시제도, 수사관행, 사형제도 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기반이 약한 국내 법의학계의 수준과 실태에 대한 깊은 반성의 기회가 되었으며, 초동수사 단계에서 빚어진 경찰실수는 과학적 수사방법 체득과 직무전문성 향상을 더욱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IV. 한국의 법의학·감식교육 및 수사직무 교육실태

본항에서는 한국의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의 법의학관련 교육실태와 경찰관련학과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수사직무관련 교육실태를 주로 소개한다.

1.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법의학관련 강좌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는 4학년 2학기에 선택과목으로서 법의학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으나,<sup>68)</sup> 연세대, 고려대 법과대학에서는 법의학강좌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의과대학의 경우는 대부분 「법의학강좌」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 석·박사과정에서 법의학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 서울대

의과대학에 법의학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정빈·이윤성·이승덕 교수가 학부 및 대학원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sup>69)</sup> 주요분야는 법의병리학(forensic pathology),<sup>70)</sup> 法유전학, 법의독물학, 법의학 분야로 나뉘어 진다. 연구뿐만 아니라 경찰에서 의뢰된 부검을 실시함으로써 실제 사건에 관련분야 지식을 적용하고 있다.

개인신원확인용 법의학교실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으며, DNA분석- 소위 DNA 지도-을 통한 개인식별(신원확인)에 대한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연세대

의과대학 법의학과는 1995년 2월 1일에 설립된 부서로서, 1999년 5월 1일부로 병리학교실의 조상호, 양우익 교수와 치과대학 구강내과학교실의 김종열, 최종훈 교수가 겸임교수로 재직하면서, 실제적인 법의학 교육 및 연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법의학과는 1명의 전임교수, 4명의 겸임교수, 1명의 강사, 2명의 연구원이 교육과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sup>71)</sup>

(3) 고려대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문국진 교수가 1976년 9월 1일 창설하였다. 비록 짧은 역사를 갖고 있지만, 문국진 교수<sup>72)</sup>, 황적준 교수의 노력으로 훌륭한 교실로 성장했다. 우리나라 법의학의 역사는 고려대 법의학교실의 역사와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sup>73)</sup>

학부에 법의학강좌가 개설되어 있다.<sup>74)</sup> 대학원 의학과에서는 병리사회계열 법의학

68) [http://law.snu.ac.kr/information/info\\_process.asp](http://law.snu.ac.kr/information/info_process.asp). 2003년의 경우 약 200여명의 학생들이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강자는 의과대학 이정빈교수가 담당하고 있으며, 법과대학내에서 실시되고 있다.

69) [http://medicine.snu.ac.kr/professor/main3\\_sub03.asp#p01](http://medicine.snu.ac.kr/professor/main3_sub03.asp#p01).

70) 법의병리학에서는 사망 後 변화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손상과 관련된 결과들이 관심영역이다.

71) [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subject/law/intro\\_subject/contents.asp?con\\_no=734&sub\\_no=0&page\\_no=1](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subject/law/intro_subject/contents.asp?con_no=734&sub_no=0&page_no=1); 연세대 원주대 법의학 강좌의 경우, 의학과 6학년을 대상으로 주당 4시간에 걸쳐 강좌가 진행되고 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의관(이한영, 양경무박사)들이 맡고 있다. in: <http://pathology.yonsei.ac.kr/student/2003%20법의학%20강의계획표.htm>.

72) 문국진 교수는 1976년 11월 26일 6명의 발기인과 함께 「대한법의학회」를 창립하였고, 현재까지 학회장을 맡고 있다고 한다.

73) <http://www.korea.ac.kr/~leg-med/intro.htm>.

전공을 개설, 임상법의학, 법의혈청학, 법의독물학, 법의검시학, 의료법학, 법의병리학, 법의혈청학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sup>75)</sup> 황적준·한길로 교수와 이용옥 박사(연구강사)가 同강좌를 맡고 있다고 한다.<sup>76)</sup>

(4) 경북대 「수사과학대학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을 중심으로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각급 형사사법기관의 법집행관들을 대상으로<sup>77)</sup> 「수사과학대학원」을 설립하여 한국의 과학수사 기반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다.<sup>78)</sup> 법정의학과, 과학수사과, 법의간호학과 등을 설치하여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sup>79)</sup>

(5) 기타 대학들

카톨릭대<sup>80)</sup> 및 한양대 의대에서도<sup>81)</sup> 법의학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2. 경찰관련학과와 법의학 관련 교육실태

경찰대의 경우 경찰수사론(4학점), 법의학(2학점), 범죄감식론(2학점), 관서실습(수사, 형사 등 4학점)과정을 이수케 하고 있다. 한편 일반 경찰행정학과와 경찰수사론

74) 의과대학 의학과에서는 매주 3시간씩 총 14주간 법의학강의 및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75) [http://graduate.korea.ac.kr/med\\_02.htm](http://graduate.korea.ac.kr/med_02.htm)

76) <http://www.korea.ac.kr/~leg-med/staff.htm>.

77) 주교육 대상은 직접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 검찰, 군사기관, 변호사, 행정자치관련 공무원 그리고 법의학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119 응급 구조요원, 소방대원, 일반 간호사 및 직장인 등이다. 불량 청소년 선도, 마약매출관리, 성폭력 피해자상담, 폭력피해자간호, 가정폭력상담, 노인건강관리 상담, 법의정신 건강간호, 법의직업병 관리, 기타 법적 문제해결자간호 등의 업무에 관심이 있는 사람과 기타 과학수사에 흥미있는者を 대상으로 하고 있다.

78) [http://www.kyungpook.ac.kr/index\\_dept.html](http://www.kyungpook.ac.kr/index_dept.html). 정원은 30명이며, 2003년 3월 신입생을 선발, 야간수업으로 진행되며 한 학기당 6학점(총 30학점)을 이수, 주 2회 출석한다. 수사과학교육은 실증자 및 전과자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통신상의 수사력의 확대, 범죄의 예방, 각종 법률상담, 변사자 및 범죄 용의자의 신원 파악, 사망 원인의 규명, 타살의 경우 범죄 행위의 재구성 그리고 각종 증거 수집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범죄와 각종 사고의 예방과 범죄 행위에 대한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하여 법의학을 기초로 범죄학, 법의 감식학, 인체 해부학, 범죄 심리학, 범죄수사학, 청소년 심리학, 법정신과학, 컴퓨터전산정보통신, 자연과학, 인문사회과학, 산업의학, 법의 화학, 독물학, 마약, 체액 감식, 자연모 및 인조모 감식, 문서감식, 법과학, 임상병리학, 법치의학, 인류고고학, 교통사고 역학, 화재감식, 범죄통계학 등 전문적인 과학수사 지식을 교육한다. 범죄 예방을 위한 전국적인 전산정보통신망 구축, CC 카메라에 포착되는 사진 분석, 범죄 현장 및 피살자의 손상 등으로 범인의 유형 판별, 우리나라의 사망 통계 및 분석, 범죄유형분석, 범죄수사 및 신원확인에 도움되는 한국인의 각종 표준치의 통계 자료 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다.

79) 대학원생들을 위하여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법의학 기초, 법과학개론, 법의학세미나, 의학기초, 산업 안전 및 재해 (Industrial Safety and Accident), 법의 병리학 (Forensic Pathology), 외상학 (Traumatology), 법의학의료정보관리 (Forensic Medicine Information Management), 검사학 (Laboratory Methodology), 법정정신의학 (Forensic Psychiatry), 법치의학, 신원확인 (Identification), 환경 및 약물범죄 (Industrial Toxicology and Drug Toxicology), 자연과학방법론, 형법이해, 법의 검시학 (Medicolegal Investigation of Death), 수사학 (Criminal Investigation), 성폭력 및 아동학대 등.

80) <http://www.cuk.ac.kr>

81) [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title=법의학](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title=법의학).

3학점) 및 과학수사(3학점) 교과목을 학습한다. 다른 대학의 경우 범죄수사론을 수강하고 있다.

3. 경찰교육기관에서의 법의학 감식 교육실태

본항에서는 「수사경찰관 전문화」를 위하여 수사보안연구소에서 실시하는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본다.<sup>82)</sup>

〈표 1〉 수사보안연구소 수사전문화교육과정

과정명	교육대상	기간	횟수	1회인원	총교육인원
연수소 계(20과정)			57		3,450
수사지휘과정	경정·경감	12주	2	75	150
조사관리자연수과정	경감·경위	8주	2	75	150
형사전문화과정	경위이하	4주	4	80	320
조사실무과정	경사이하	4주	3	40	120
사이버범죄수사과정(고급)	경정이하	2주	1	40	40
사이버범죄수사과정(중급)	경위이하	2주	4	40	160
과학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4	80	320
화재사건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1	40	40
지능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2	40	80
마약류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3	80	240
컴스택분석과정	경위이하	1주	3	50	150
학교폭력상담과정	경위이하	1주	3	80	240
여성폭력예방수사과정	경위이하	1주	6	50	300
인질범형상전문과정	경위, 경사	1주	2	80	160
경제금융사범수사과정	경위이하	2주	3	80	240
환경범죄수사과정	경위이하	1주	2	40	80
선거사범수사과정	경정이하	1주	2	40	80
보안수사지휘과정	경정~경위	2주	2	30	60
보안수사과정	경위이하	6주	3	40	120
보안실무과정	경위이하	2주	5	80	400

수사지휘과정, 과학수사과정, 형사전문화과정에서의 과학수사·감식분야 전문화 교육내용을 주로 살펴본다.

82)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서울: 경찰청, 2003) 참조.

(1) 수사지휘과정

중점교육방향은 초동수사, 탐문수사, 현장감식 등 전반적인 수사기법을 체득하는 것이며, 민·형사 판례 등 연구, 실무이론 및 지휘능력 향상 그리고 세미나위주의 교육으로 문제해결 및 관리능력을 보강하는 것이며, 연간 150여명(경정·경감)을 교육시키고 있다.<sup>83)</sup> 기간은 12주(456시간, 1일 7시간)이며, 교과내용은 기본소양(7과목, 66시간) 14%, 직무분야(47과목, 390시간) 70%, 행정 16%이다. 특히 직무분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표 2〉 한국경찰의 수사지휘과정 교육내용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교과목	시간
1. 어음수표법	10	15. 환경범죄수사	6	29. 인질범죄수사	4
2. 민법	10	16. 풍속사범수사	9	30. 시위사범수사	4
3. 즉결심판절차법	6	17. 폭력사범수사	6	31. 성폭력, 가정폭력 수사	6
4. 범죄학	10	18. 통신추적수사	8	32. 경찰청 과학수사과, 컴퓨터실 견학	7
5. 민·형사관련사건	10	19. 직무사례 세미나	40	33. 국립과학수사연구소실습견학	7
6. 법의학	17	20. 범죄조사분석(의물착오)	9	34. 컴스렛의 이해	2
7. 법의학청학 및 유전자 지문	6	21. 거짓말탐지기능 장비취급요령	4	35. 최면술 수사기법	3
8. 법치의학	6	22. 현장감식	24	36. 출입국 규제요령	2
9. 외사범죄수사	3	23. 화재사건수사	9	37. 선거관련법규 연구	3
10. 강력사건수사(수사본부운영)	9	24. 지문분류 및 채취	7	38.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3
11. 절도범 수사	6	25. 대형안전사고(폭발물, 건물붕괴)	6	39.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3
12. 마약사범수사	9	26. 수사예산확보 및 집행	2	40. 수사자료표 작성요령	3
13. 자금세탁방지법 및 FIU제도 해설	9	27. 수법·공조수사	9	41. 수사력 강화	3
14. 신용카드범죄수사	6	28. 사이버범죄수사	6	42. 현장견학(형사법정 등)	7

특히 同교육과정에서의 법의학(17시간), 법의학청학 및 유전자지문(6), 법치의학(6), 현장감식(24), 화재사건수사(9), 지문분류 및 채취(7), 최면술수사기법(3), 과학수사연구소실습(7) 등은 법의학감식 교육내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83)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 91면 이하.

(2) 과학수사과정

전문적인 과학수사·감식(forensic identification)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야말로 지문채취 등 현장감식을 할 수 있는 과학수사요원(경위이하) 육성, 첨단 과학장비 사용요령 등 교육을 통한 과학수사기법 배양 그리고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현장 초동조치 및 채취·감식요령을 숙달케하는 것이 교육목표이다.<sup>84)</sup> 중점 교육방향은 유류지문·족적·혈흔 등 증거자료 발견채취기법 학습, 거짓말 탐지기수법영상시스템 등 과학수사장비 사용방법 숙달, 국과수 견학·범죄현장실습 등 감식기술 연마 위주의 교육이다. 연간 320여명에 대하여 2주간(76시간)에 걸쳐 교육시키며,<sup>85)</sup> 구체적인 법의학감식관련 강좌는 다음과 같다:

현장감식 실습(9시간), 지문분류 및 채취요령(6), 족적채취 요령(3), 국과수 현장실습(21), CCTV 판독 및 현장사진 촬영기법(3), 풍타주 활용요령(2), 수사감식장비 사용요령(3), 과학수사(4), 수사자료표 작성(3), 통신추적수사(3) 등이다.

(3) 형사전문화과정

교육목표는 중요범죄 수사를 주도할 수 있는 수준의 형사실무 요원 육성, 현장감식 등 실무에 적합한 교육을 통해 수사능력 배가 그리고 지능화·조직화되어가고 있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정보 교류이다.<sup>86)</sup> 중점교육방향은 수사개시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수사기법 심층연구, 범죄추세 분석·국내외 사례연구 등을 통한 현장대응능력 제고 및 국과수 실습·각종실습실 활용 등 실습위주로 연간 320여명(경위이하)을 대상으로 4주간(28과목, 152시간)의 교육을 실시한다.<sup>87)</sup> 법의학감식분야에 해당하는 법의학(5시간), 지문채취기법 실습(8), 족흔적채취 및 감식 실습(4), 현장감식(초동수사, 10), 국과수 현장실습(4) 등의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V. 외국의 법의학·감식교육 및 수사직무 교육실태

본항에서는 각국의 경찰관 신규임용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범죄수사」관련 강좌의

84)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 110면 이하.

85) 소양교과 3과목·6 시간(8%), 직무분야 10과목(75%) 및 기타 3과목이다.

86) 경찰청, 「2003년도경찰교육훈련계획」, 98면 이하.

87) 소양교과 5과목·16시간(11%), 직무 및 기타 23 과목·136 시간(73%)이다. 구체적인 직무분야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1. 법의학 2. 탐문수사 3. 절도범수사 4. 폭력사범수사 5. 강력사건수사 6. 지문 채취기법 실습 7. 족흔적 채취 및 감식 실습 8. 범죄조사분석(의물착오) 9. 현장감식(초동수사) 10. 민형사관련 사건(판례) 11. 폭력피해자 및 불량청소년 상담기법 12. 수법·공조수사 13. 조사기법 및 수사서류작성 14.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15. 수사자료표 작성요령 16. 통신추적수사 17. 성폭력수사 및 인권 18. 직무사례 세미나 19. 국과수 현장실습 20. 형사법정, 교도소 견학 등이다.

규모와 전문화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 1. 독일경찰 사례

독일의 경우, 警察權(Polizeigewalt)과 내적 안전(innere Sicherheit)에 대한 입법권은 원칙적으로 各州의 관할사항이다.<sup>88)</sup> 各州에서는 독자적인 경찰법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경찰조직과 교육, 인사문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관의 입직경로는 순경급, 경위급 및 경정급(Polizeirat)<sup>89)</sup> 신규임용과정으로 대별된다.

#### 1)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수사직무교육

##### (1) 순경급 기본교육과정

순경급 신규채용시 기본 교육기간의 경우, 각주별로 기간의 長短이 있으나 평균 약 30개월 정도이다.<sup>90)</sup>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州 경찰의 경우,<sup>91)</sup> 순경급

기본교육기간은 30개월이며, 同기간 중 6개월간의 실습이 병행된다. 교육기간 중, 범죄수사학(Kriminalistik), 과학수사방법론(Kriminaltechnik), 범죄전략론(Kriminaltaktik), 범죄학(Kriminologie)관련 수업 및 실습은 약 308시간 정도 각각 실시된다.<sup>92)</sup>

#### (2) 경위급 신규채용시 기본교육과정 - 경찰대학과정

바덴-뷔르템베르크州 경찰대학의 사례를 들면, 인문계 고등학교(Gymnasium)를 졸업하고 경찰대학생으로 선발되면, 약 54개월간의 기본교육 과정을 이수한다. 범죄수사학 관련 수업은 일반경찰 지원자 313시간·수사경찰 지원자 532시간, 심리학 220시간 정도이다.<sup>93)</sup>

88) Art. 30. Grundgesetz: Funktion der Lander, Art. 70 GG: Gesetzgebung des Bundes und Lander.

89) 내부승진자 및 사법시험합격자(Juristen)들로 이루어진다.

90) Rupprecht (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pp. 356-357. 브란덴부르크: 30개월, 베를린: 36개월, 바덴-뷔르템베르크: 30개월, 바이에른: 32개월, 브레멘: 30개월, 헤센: 30개월, 함부르크: 30개월, 맥클렌부르크-포포머른: 30개월, 니더작센: 30개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30개월, 라인란트-팔츠: 24개월, 샬레비히-홀슈타인: 36개월, 자아란트: 33개월, 작센: 24개월, 작센-안할트: 30개월, 튀링겐: 24개월, 연방경찰: 30개월.

91) 1998년말 현재, 바덴-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州는 인구는 10,400,000여명, 면적은 35,000km<sup>2</sup>, 경찰관은 약 27,000여명, 기타직원 약 8,000여명이다. 1997년말 현재 총범죄발생건수(교통과실범, 국가적법익침해사범 제외)는 598,647건이다.

92) 임준태,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1999, 120면. 기본교육 및 1, 2단계의 심화과정 18개월 동안 실무 및 이론강의가 총 2,816시간 정도 실시된다.

93) 기동경찰국, 州경찰학교의 24개월간 기본교육 과정 및 경찰대학 30개월 교육기간 중 이론 및 실무강의는 총4,008시간 정도이다. 물론 실습교육시간은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독일경찰의 경우, 사회학, 심리학, 정치학에 대한 이론강의가 많이 실시되고 있는 바, 이는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관련이 많다.

### 2) 일반대학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 (1) 대학교육과정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독일에서는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에서 법의감식 교육이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항에서는 바덴-뷔르템베르크州를 중심으로 소개한다.<sup>94)</sup>

##### ① 법과대학의 법의학관련 강좌

바덴-뷔르템베르크州내에 있는 Freiburg 법과대학의 경우, 범죄수사학(2학점),<sup>95)</sup> 법의학(2학점), 의료법(Medizinrecht, 2학점) 그리고 법의정신병학(forensische Psychiatrie) 강좌가 선택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다.<sup>96)</sup>

하이델베르크법과대학에서는 동의과 대학 법의학연구소 소장인 Mattern교수가 진행하는 법의학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 ② 의과대학의 법의학연구소 등

###### ㉠ Freiburg 의과대학

푸라이부르그 의과대학의 법의학 강좌는 1755년부터 정식강좌로 정착되었으며, 1942년 처음으로 독립적인 법의학 연구를 위한 「법의학연구소」가 설치되었다.

현재에는 1989년부터 Stefan POLLAK 박사가 법의학강좌 담당교수로 재직하면서 강의 및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sup>97)</sup>

同연구소에는 4개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바, 법의병리학과,<sup>98)</sup> 법독성학과,<sup>99)</sup> 법의증거학 및 친생자감정과<sup>100)</sup> 그리고 초본약물 및 초본마약과(Pflanzliche Drogen/Herbal Drugs) 등이다.<sup>101)</sup>

###### ㉡ Heidelberg(하이델베르그) 의과대학

동의과대학에는 「법의학 및 교통의학연구소

94) 바덴-뷔르템베르크州내에는 Heidelberg, Ulm, Freiburg, Tuebing, Karlsruhe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있으며, 4곳에는 법의학연구소가 각각 설치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동주에는 60-80여명의법의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함. 한편 同州는 인구 10,475,392명(2000년 1월 기준), 면적은 35,000km<sup>2</sup>이다. 연간 범죄발생건수는 564, 547건이다(2000년 12월 기준).

95) 범죄학교수 또는 Freiburg 지방경찰청 부장검사가 동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96) Stefan Pollak는 법의학(<http://www.jura.uni-freiburg.de/fs/alt/files/kvv/kvvs962.htm>), H. Kindt는 법의정신병학(<http://www.jura.uni-freiburg.de/fs/alt/files/kvv/kvvs962.htm>)을 담당하고 있다.

97) <http://www.uniklinik-freiburg.de/rme/de/auw/index.xml>.

98) 형사사건과 관련된 부자연사 그리고 사인불명 사체에 대한 부검(Obduktion)과 임상법의학 측면에서 상해·어린이학대·성범죄 피해자 신체에 대한 감정을 실시한다. 범죄현장 및 현장보존에 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6명의 법의관 및 연구소장인 Pollak 교수가 근무하고 있다.

99) 응급성 독물, 血中 알콜분석, 법의학적 관점에서 혈액·소변·모발 등에 잔류하고 있는 독성물질분석(의약품, 마약)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3명의 법의관이 근무하고 있다.

100) 생물학적 증거(혈액, 타액, 정액 등), 법의유전자분석(DNA-Analytik), 친생자감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3명의 법의관이 근무하고 있다.독일에서는 DNA분석 및 감정시설(DNA-Data Bank 등)이 수사기관이 아닌 각급 의과대학 연구소에 설치하고 있으며, 증거물을 경찰이 同기관에 의뢰하고 있다.

101) <http://www.uniklinik-freiburg.de/rme/de/auw/index.xml>.

(Institut fuer Rechtsund Verkehrsmedizin)가 설치되어 있다. 同연구소에는 의학, 화학, 약학, 심리학, 생물학, 물리학, 공학 그리고 의료정보학 분야를 전공한 전문가 15명과 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sup>102)</sup>

특히 법적 안전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회복에 관한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법률가, 의사 및 응급구조원 및 경찰관들을 위한 기본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sup>103)</sup> 6명의 법의관(소장 포함)이 연간 400여건의 부검을 실시하고 있다.<sup>104)</sup>

주요 임무(Hauptaufgabe)는 부검,<sup>105)</sup> 조직학, 면역조직화학적 그리고 독성학적 분석과 외상학적 재구성 등을 통한 사인불명 및 자살의 규명(사고, 고의 혹은 과실살해, 자살, 독살 특히 급사)이다.

그리고 중독사 의심환자, 사인불명 사망사건 및 자동차에 의한 충격사건, 불법 행위 책임에 영향을 주는 것(예를 들면, 알콜, 약물 그리고 불법마약) 등에 독성학적 분석, 외부기관과의 법독성학적 분석을 위한 연구

시도이다.

여러 대의 차량들에 의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운전자 확인을 위한 교통의학적 조사 또는 교통사고 용의자에게 영향을 미친 질병, 필요한 약물의 오남용 그리고 알콜,<sup>106)</sup> 약물 및 불법마약의 중독과 같은 것에 대한 조사 그리고 임상분야간의 학제적 협력이다.

논란이 된 친생자관계의 감정, 형사 사건 및 법적 분쟁이 있는 사건에 있어서 개인식별을 위한 미량의 혈흔, 분비물, 피부, 모발 혹은 영업상의 증거에 대한 혈청 및 법유전학적 조사이다. 기계적 하중에 의한 잠재손상의 판단을 위한 사고 재현과 외상적 분석 등이다.

102) <http://www.med.uni-heidelberg.de/einrichtungen/rechtsmedizin/index.html>.

103) 하이델베르크 법의학연구소 副소장인 Ingo Pedal박사에 의하면, 법의병리학 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은 5년간의 일반의학과정을 마친 후 1년간의 병리학을 공부한다. 그동안 6개월간 법의학교육을 받는다고 함.

104) 하이델베르크 법의학연구소 W. Reichert박사와 대담한 내용이다. 동인은 유전자감식 전문가이다. 2003년 1.1.부터 8월 5일까지 238건의 부검이 실시되었다. 필자가 同연구소를 방문할 당시 2건의 부검이 진행되고 있었다. 특히 부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검찰에서 지급하며, 일반증거물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경찰에서 지급한다고 함.

105) 독일에서는 부검은 법의학 전공(법의병리학, Rechtspathologie)의사들에 의해서 실시된다.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에서는 유전자, 혈액, 독극물, 약물에 대한 분석을 한다. 한편 州법회수사국(LKA)에서는 의학분야를 제외한 생물, 이화학, 물리적 감정업무를 수행하는 바, 주로 총기류, 문서감정, 지문, 족흔적, 공구흔 등을 감정한다.

106) 필자가 대담한 Georg Schmidt 박사(독물분석학)에 의하면, 연간 5,000-6,000여건 정도의 혈중 알콜 관련사건을 감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전역에는 약 400여명의 독성학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함.

〈표 3〉 하이델베르크 의과대학 법의학연구소 조직<sup>107)</sup>

Forensische Pathologie 법의병리학과	Forensische Toxikologie 법독물학과	Forensische Genetik Serologie 법유전 및 법혈청학과	Verkehrsmedi- -zin 교통의학과	Exp.u. forens. Biomechanik 법의생물공학학과	Unfallfor- -schung 사고조사과	Medizinische Informatik 의료정보학과
소장 Rainer Mattern Prof. Dr. med.	Rolf Aderjan Prof.Dr.rer.nat. Dipl.-Chem.	Walter Reichert Dr.rer.nat. Dipl.-Biol.	Hans Th. Haffner Prof. Dr. med.	Dimitrios Kallieris Prof. Dr. rer. nat Dipl.- Phys.	Florian Schuler Dipl.-Ing.	Falk Gaus Dipl.-Inf. Med.
부소장 Ingo Pedal Prof.Dr.med.	Georg Schmitt Dr. rer. nat Dipl.-Chem.	Ulrike Pruter MTA	Peter Stroheck Dr.sc.hum. Dipl.Psych.	Hans Riedl Dr.rer. nat Dipl.- Phys.		
Gisela Zimmer Dr.med.	Gisela Skopp Apothekerin Dr. rer. nat.	Angelika Sulzmann MTA	Christiane Thieme Dipl.-Psych.	Bernd von Wiren Programmierer		
Kirsten M. Stein Dr.med.	Beate Lutz Dr. sc. hum. Apothekerin		Andreas Schuff Dr. med.			
Achim Schmidt Sektionsgehilfe	Christine Meyer Ltd. CTA					
Christian Weigl Sektionsgehilfe	Regine Hambeck CTA					
Ralf Bartsch Sektionsgehilfe	Isolde Harle CTA					
Cornelia Geißler- Wetzel MTA	Erika Nadler Chemielaborantin					
	Beate Neureither CTA					
	Monika Scheitz Arzthelferin					
	Ute Tremmel CTA					
	Matthias Wesche CTA					
	Sandra Wolf CTA					

107) <http://www.med.uni-heidelberg.de/rechtmed/organigr.htm>.

### 3) 수사경찰 전문화 과정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바덴-뷔르템베르크주경찰에서는<sup>108)</sup> 일반 예방경찰(Schutzpolizei, 방범, 교통, 경비 등)이 수사경찰(Kriminalpolizei)로警科를 바꾸기 위해서는 수사전문화 교육(Einfuehrungsfortbildung)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내무부령(\$23 Absatz 1 und 2 LVOPol)<sup>109)</sup>으로 정하고 있다. 교육은 주로 州범죄수사국(Landeskriminalamt)<sup>110)</sup> 및 지방경찰청, 州경찰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의 중점은 형사당직반, 법의감식반 및 수사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과정은 순경급-경감급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총 29주간(7개월 1주)동안 3단계에 걸쳐 실시된다.<sup>111)</sup>

○ 실습 및 세미나 교육 5개월

▷ 다음 5군데 실무수사 부서에서 3개월간 이루어진다:

강력범죄반(Kapitaldelikte, 살인, 강도): 4주간

- 마약범죄수사반 : 2주간
- 성범죄수사반 : 2주간
- 과학수사기법 및
- 범죄감식(Kriminaltechnik): 3주간
- 범죄수사정보관리·서류작성: 1주간.

▷ 나머지 2개월 동안은

경찰수사정보관리시스템, 증거보전, 현장사진촬영, 감식근무 및 활동, 검시 및 부검관련 업무, 지역에 맞는 범죄예방활동, 범죄자별 특수분야 교육이 분야별 최소한 1주씩 실시된다. 그리고 나서 개별경찰관들의 적성, 흥미, 인적 특성에 따라 혹은 해당경찰관서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경찰관들을 각 분야별로 선발한다.

○ 심화교육과정 2개월

사례별 교육이 이루어지며,<sup>112)</sup> 1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사기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교육이 실시된다. 강의, 토론, 팀 및 그룹별 활동, 훈련 및 연습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처럼 독일경찰은 수사

108) 이하 자료는 필자가 Heidelberg경찰서를 방문, 수사경찰부서에서 입수한 공문서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한 것이다. Heidelberg 경찰서에는 1,130여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는 바, 그중에서 230명은 수사경찰관, 900여명은 일반예방경찰이라고 한다. 특히 수사경찰관은 전원 경위급 이상의 간부경찰관이며, 일반예방경찰의 경우 경위급 간부경찰관이 50%이라고 한다.

109) Polizei-Laufbahnverordnung의 약자.

110)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우리나라 대검찰청내 설치된 감정부서와 같은 조직이 독일경찰에는 없다.

111) • 기본안내교육(Grundseminar, 1주): 州경찰학교에서 실시  
• 실습세미나(Praxisseminar, 5개월): 州범죄수사국 및 지방경찰청수사부서  
• 심화교육(Aufbauseminar, 2개월): 州경찰학교에서 실시

112) 사례의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검시업무, 마약범죄, 실종자수색, 성범죄, 화재사건 및 최근 범죄유형들. 그리고 종합적인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人的증거, 과학수사기법, 전산업무, 위장수사, 범죄자 및 범죄지향적 수사, 범죄대책을 위한 국제적 협력, 갈등처리 및 위기관리 개입, 예방 및 종합적 과제 등이다.

전문화 교육과정을 통해 최소한 9-10주 정도는 과학수사기법, 범죄감식, 증거보전 그리고 현장사진촬영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한편, 수사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분야별 전문화교육은 짧게는 14일에서 10주에 이른다고 한다.

## 2. 스위스경찰 사례

### 1) 바젤주 경찰(Polizei-Baselland)

순경후보생(Polizeiaspirant)들은 경찰 학교에서 15개월간(1,494시간 이론교육, 19주의 실습교육)간의 이론 및 실무교육을 받는다. 범죄수사전략론 74시간, 범죄수사학 37시간과 10시간의 범죄학 수업이 이루어진다.

### 2) 베른주 경찰(Kantonspolizei-Bern)

순경급 신규임용 교육기간은 15개월(2,535시간)이다. 교육기간 중 26시간의 범죄수사전략론, 76시간의 범죄수사학, 12시간의 과학수사론 교육이 각각 실시된다.

### 3) 기타 州경찰

스위스의 8개 市 및 州경찰(Luzern Stadt,

113) URL: <http://www.zsps.ch> 2000.08.02.

Luzern Kanton, Zug Stadt, Zug Kanton 등)의 경찰관 양성을 위한 연합 경찰교육기관인 스위스 중앙경찰학교(Zentralsch weizerische Polizeischule)에서의 교육기간은 12개월(1,026시간)정도이다. 범죄수사전략론 및 범죄수사기법론이 160시간 정도 교육된다.<sup>113)</sup>

## 3. 캐나다경찰 사례

### 1) 기본교육과정에서의 수사직무교육

연방경찰(RCMP)의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은 22주이다. 동기간 수료 후에 경찰관으로 임명을 받고, 6개월 동안 현장실습을 실시한다. Ontario州의 순경급 기본교육은 17주이며, 시보기간은 12개월이다.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에서는 밴쿠버市를 비롯한 11개 지방자치단체 소속 경찰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 순경급 기본교육과정은 9개월 정도(35주)이다.

### (1) 연방경찰 사례

연방경찰 순경급 기본교육의 주요 내용은 문서작성, 응급처치, 피의자호송, 무전기사용, 경찰견관리, 범죄수사분야(폭발물수사, 현장보존, 범죄수사 실험실 운용, 지문채취,

사진촬영기법, 화재현장 수사 등),<sup>114)</sup> 호신술, 경찰역사 법률분야(형법 및 연방법규), 추적운전기법, 사격술 및 총기류 조작, 체력단련, 수영, 인간관계, 문화적 다양성, 인간행동과 경찰개입 등에 관한 내용이다.<sup>115)</sup>

(2)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경찰학교 사례

British Columbia州 경찰학교에서는 연방경찰과 계약을 맺지 않은 州內 11개 지방자치경찰관서의 경찰관 신규임용교육 및 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순경급 신규 교육과정(35주)의 주요 교육분야는 법률(형법,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 연방법규)분야 15.6%, 범죄수사 및 순찰기법분야 16.6%,<sup>116)</sup> 의사소통기법, 피의자체포관련 내용, 추적운전연습, 도로교통법규 및 사고조사요령, 사격술 및 화기류조작, 체력단련 등이다.

2) 일반대학 및 경찰교육기관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일반대학 및 전문직업교육기관에서도 법의감식교육이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또한 연방경찰대학(Police College in Ottawa) 및 연방경찰학교(Training Academy in

Saskatchewan)에서도 법의감식 분야 전문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1) 일반대학 및 직업교육기관(BCIT)의 법의감식 교육

① 토론토대학교의 법과학부(Forensic Science Program University of Toronto at Mississauga)

同대학에서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법과학전공 및副전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법과학부에서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sup>117)</sup>

- 1학년 : 화학분야(The Study of Matter and Its Transformations)
- 2학년 : 생물학분야(Introduction to Physiology, Intro Cell & Molecular Biology, Introductory Genetics, Lab in Molecular Biology & Genetics), 법과학(Forensic Science), 윤리와 법률(Ethics and the Law),
- 3학년 : 인류학(Human Osteology), 곤충학(Entomology), 법곤충학(Forensic Entomology), 통계학(Statistics), 통계학의 응용(Application of Statistics), 생물공학(Biometrics I, II),
- 4학년 : 법과학에서의 멘토십(Mentorship

114) Identification services: Bombs and infernal devices, Crime Scene protection, Crime detection laboratories, Plan drawing, Fingerprinting, Photography, Personal descriptions, Identification services, Fire scene investigations.

115)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p. 81.

116) Investigation & Patrol 직무관련 내용이 132시간 정도 배정되어 있다.

117) <http://www.erin.utoronto.ca/~w3fsc/DoubleMajorProgram.htm>. 수료자에게는 이학사(Bachelor of Science)를 수여한다.

in Forensic Science).

법과학부에서는 인류학(Anthropology), 생물학(Biology), 화학(Chemistry) 그리고 심리학(Psychology)전문가 과정을 개설하고 있으며,<sup>118)</sup> 학생들에게 인류학, 생물학, 화학, 컴퓨터공학 및 심리학을 副전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싸이먼 프레저대학교 범죄학부(School of Criminology at Simon Fraser Uni.)

Gail S. Anderson(女)교수<sup>119)</sup> 및 N. Hobischak이 진행하는 법과학 강좌가 있다. 법과학은 형사사법에서 과학을 응용하는 것으로서, Anderson 교수는 법의곤충학을 전공한 者로서,<sup>120)</sup> 법의학, 의학, 獸醫學 그리고 곤충학(entomology), Criminal Profiling, 법심리학, 범죄생물학 그리고 「법과학의 발전된 기법」을 강의하고 있다.<sup>121)</sup>

③ 브리티시 컬럼비아 공과대학(BCIT)

과학수사(Forensic Investigation)에 관한 學士학위는 1997년도에 BCIT(British Columb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던 고급 전문자격프로그램

(Advanced Specialty Certificate Program)의 성공으로부터 발전되었다. 이 學位의 목적은 과학수사에 관한 특수화된 다양한 부서에서 근무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의 수사능력과 이론적인 기반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同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은 법과학, 경제 범죄 및 컴퓨터 범죄분야 전공을 선택할 수 있다.<sup>122)</sup>

▷법과학전공 과정을 졸업한 사람은 학생들의 학문적 배경과 업무경험에 따라 수사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바, 다음과 같은 것이 이에 속한다:

- 과학기술자, 분석가 혹은 (상급학위가 있는)법과학연구소의 과학자
- 경찰관(즉, 법의감식 분야)
- 검시관(Coroner)

▷경제범죄 및 컴퓨터 범죄를 전공한 사람은 전문가들이 상업적인 범죄와 컴퓨터 범죄수사와 예방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필요한 부가적인 기술과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 분야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수사(관련)업무에 종사하게 된다.<sup>123)</sup>

118) <http://www.erin.utoronto.ca/~w3fsc/>

119) 필자는 2004년 8월경 Simon Faser Uni.에서 연구할 때, 同교수를 면담한 바 있다.

120) <http://www.sfu.ca/criminology/facstaff.htm>.

121) <http://www.sfu.ca/criminology/Ofis033.html>.

122) [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

123) 경찰수사관, 지방경찰 수사관, 관리인, 법인경비회사, 네트워크의 안전관리인, 위험 관리인, 내부 감사관, 손실보상청구 조사관,

한편, 同공과대학(BCIT)에서는 법과학기법(Forensic Science Technology)에 대해서 부분전공(Parttime Studies Course) 할 수 있도록 2003년 가을학기에 무려 41개 관련분야 강좌를 개설한 바 있다.<sup>124)</sup> 특히 범죄현장수사, 법과학입문, 법행동과학(Forensic Behavioural Science), 법의병리학 그리고 지문감식의 원칙과 방법론(Principles and Methods in Fingerprint Identification)강좌는 주목할만하다.

BCIT에서는 과학수사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하여 2년 동안(이수학점 60) 그러한 종류와 같은 상위 수준의 Course-Work를 제공한다.<sup>125)</sup>

(2) 수사경찰 전문화 과정에서의 법의감식 교육

① 연방경찰대학과정(Canadian Police College at Ottawa)

연방경찰대학의 경찰학부(Police Science School)는 경찰관들에게 전문화된 실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설되었다. 컴퓨터범죄를 포함한 범죄수사관들과 폭발물, 교통사고 및 법의감식전문가들을 위한 과정이다. 同과정은 캐나다 경찰뿐만 아니라 외국의 경찰관들에게도 문호가 개방되어 있으며, 명성이 높은 교관진, 소수정예, 우수한 교관/학생들, 훌륭한 시설 그리고 실천위주의 경험학습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sup>126)</sup>

▷ 운용중인 수사전문화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폭발물처리, 교통사고조사,
- 수사전문화과정(중요사건관리 및 수사, 정보분석, 위기상황, 경찰보안지도과정, VICLAS과정, 거짓말탐지기과정),
- 법의감식(법의감식과정, 혈흔감식, 지문분류),
- 컴퓨터이용 범죄수사기법(technological

법의학적 회계사, 보안 조사관, 민간경비/수사실무가 등이다.

124) [http://courses.bcit.ca/list.php3?subj\\_codes%5B%5D=FSCT](http://courses.bcit.ca/list.php3?subj_codes%5B%5D=FSCT).- Crime and Science Seminar:Chemistry for Forensic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Technology Concepts For Forensic Investigation 1,2; Drug Recognition Expert Course 2; Criminal Law 1: Legal Procedures; Criminal Law 2: Legal Evidence: Science, Technology and the Law; Introduction to Commercial Crimes in Canada; Introduction to Computer Crime Studies; Crime Scene Investigation; Introduction to Forensic Science; Forensic Behavioural Science; Forensic Pathology; Forensic Biology: DNA Typing; Forensic Biology: Advanced Molecular Techniques; Explosive and Fire Accelerants; Trace Chemical Evidence; The Medicolegal Aspects of Alcohol; Drug Identification and Toxicology; Drug Analysis; Principles and Methods in Fingerprint Identification; Forensic Photography; CCTV and Forensic Examination; Forensic Imaging Techniques; Loss Prevention and Risk Management; Commercial Crime Investigative Techniques; Tactical Analysis 1; Introduction to Intelligence; Forensic Accounting 1; Investigation of Insurance Fraud 1; Forensic Accounting 2; Tactical Analysis 2; Internet for Investigation; Law for Computer and IT Professionals; Computer Security Networks 1; Computer Forensics; Encryption; Graduation Project/Internship 1; Graduation Project/Internship 2; Graduation Project/Internship 3.

125) [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

126) [http://www.cpc.gc.ca/scienc\\_e.htm](http://www.cpc.gc.ca/scienc_e.htm).

crime learning institute, 컴퓨터상의 수색 및 압수, 인터넷압수, 네트워크를 위한 수사기법, 사이버범죄),

- 원격교육프로그램, 연구활동 등이다.

▷ 또한 법의감식 전문화교육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127)</sup>

㉠ 법의감식분야(Forensic Identification: FIC)

同교육과정은 10년정도 경찰경력이 있는 者를 대상으로, 33일간(월-금, 8주) 20명에게 실시된다. 同과정은 경찰관들로 하여금 증거를 인식, 수집, 조사, 촬영, 보존하고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감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발전시킨다.<sup>128)</sup> 주요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sup>129)</sup>

- 지문감식업무(Fingerprints, 양적, 질적 마찰용선 분석): 마찰, 피부구조, 지문 패턴, 인식지문비교, 지문분석리포트, 장문(掌紋)비교.
- 사진촬영기법(Photography): 필름의 적절한 노출, 플래쉬사용한 촬영, 디지털 이미지(Adobe Photoshop, Adobe Illustrator 포함)활용, 복사입문, 범죄

현장촬영, 지문촬영, 작은 물체 촬영, 확대촬영, 음화(陰晝)의 평가, 필터사용, 원근투시법활용, 법의광선(자외선 등).

- 범죄현장감식(Crime Scene): 분말 및 화학약품, 현장약도, 물리적 증거, 2차원적 흔적, 3차원적 증거복원, 자동차 및 타이어흔적, 범죄현장 접근 및 진행, DNA 증거, 비디오카메라입문, 혈흔 패턴인식, Criminal Profiling, Virtual Reality(가상현실), 주요사건 발표, 법의병리학.
- 전문감정가의 조언(Expert Advice): 비교차트, 전문감정의 준비 및 발표, 모의재판.

한편, 고급과정(Senior Forensic Identification)은 법의감식 기본과정을 이수한 者를 대상으로 현장감식요원으로 근무하게 될 경찰관들에게<sup>130)</sup> 10일간의 추가교육을 제공하는 것이다. 同과정의 목적은 증거의 인식, 수집, 조사 그리고 제출에 관한 감식전문가로서의 기량을 연마하기 위한 것이다. 법의감식 전문가들과 현장의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기술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을 때를 대비한 과정이다. 교육내용은 법인류학, 법곤충학, 법의타이어

127) [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

128) 교육종료시점에는 지문대조실무, 사진촬영이론, 범죄현장감식이론 및 범죄현장실무에 관한 내용으로 시험(70점 이상)을 치러야 한다.

129)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130) 기본 감식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그와 동등한 교육(사진촬영, 지문감식, 다양한 형태의 물리적 증거에 대한 수집·감식·보존 그리고 제출을 포함한 현장감식 등)을 수료한 者를 대상으로 한다. 현장감식전문가로서 3-10년정도 정식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교육생들은 현장(젓은 잔디, 진흙 등)에 나갈 때에는 특수한 복장을 해야 하며, 1개반은 보통 20명 정원이다.



혼감식, 법치과학, 지문학, 지문과 물리적 증거에 관한 신기법 혈흔패턴의 이해, 선별된 주제들이다.<sup>131)</sup>

㉠ 혈흔감식과정

기본혈흔패턴 인식(Basic Bloodstain Pattern Recognition: BBPRC) 과정인데, 법의감식 기본과정을 이수한 者를 대상 (18명)으로 5일간 실시된다.

증거로서 가치가 있는 잔류 혈흔의 모든 형태를 전문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법의감식 전문가 양성과정이다.<sup>132)</sup> 교육내용은 혈흔 패턴이론, 혈흔패턴의 촬영, 투사된 혈흔 패턴의 분석, 사건평가, 범죄현장의 再구성, 실습, 혈흔분석에 관한 기본수학 및 물리학개론, 혈흔패턴에 관한 컴퓨터분석 입문, 실습훈련: 실험 및 모의범죄현장, 필기 및 실기시험 등이다.

㉡ 지문분류과정(Henry Fingerprint Classification: HFCC)

Henry式 분류방식을 사용하여 지문을 분류하기 위하여 고용된 혹은 고용예정인 者들을 위하여 제공된 프로그램으로서, 5일동안 실시된다. 지문이론, 헨리식 지문분류법 그리고 지문용선학(ridgeology) 등이 교육된다.<sup>133)</sup>

▷ 법의감식 초보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연방경찰대학 법의감식연구센터(Forensic Identification Research Services)에서는 48개월 과정의 법의감식 초보자훈련과정을 통해 인증된 “법의감식전문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同연구센터는 감식기법과 장비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다.<sup>134)</sup>

〈표 4〉 캐나다 연방경찰의 법의감식전문가 양성과정(48개월)<sup>335)</sup>

Pre-Course	1개월차	2개월차	3개월차	4개월차	5개월차	6개월차	7개월차
• 법의감식직무에 흥미 혹은 직업부합성 여부 판단 • 후보자사건확인 • 3주간 적합성평가 • 승인위탁 및 조건승부	• 훈련기간시작, 할당된 감식부서로 효과적인 배치 • 부과된 교재연구시작 • 지문대조훈련시작 • 부과된 다른 훈련 / 절차개시	• 지문대조과정 • 다른 수업, 실습 및 훈련계속 • 감독자임명하에 • 실형실에 친숙하기 (교육일시 1개월과 자격심사기간중 어느때나)	• 1차시험 실시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연구프로젝트개시 (교육일시 1개월에서 자격심사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최소한 5개 프로젝트완성)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2차 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2차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8개월차	9개월차	10개월차	11개월차	12/13개월차	14~20개월차	14~48개월차	On-Going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3차 시험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자격심사요청 • 자격심사를 위한 준비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지문대조과정 • 자격심사요청 • 자격심사를 위한 준비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자격심사 실시 • 지문대조과정 • 자격심사요청 • 자격심사를 위한 준비 • 수업, 연습, 훈련 그리고 감독자의 임명하에	• 필요하다면, 처음시도한지 6개월 이내에 자격심사 반복 • 필요할 때, 추가수업, 실습과 훈련 실시 • 감독자의 임명하에 수사실행 계속 • 추가적인 필요한 법의감식훈련 완성 • 경험있는 법의감식전문가의 지도하에 사건수사 실행 • 승진절차진행	• 모든 법의감식요원들을 위하여 계속적인 학습을 강하게 격려하기 • 추천된 과정을 위한 FIAT 프로그램기여도 참조	

구체적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훈련(Modular Training)

모듈(Module)은 필수적·실무적인 것과 연구과제들을 임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 모듈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속한다:

- 지문과 사진 증거에 관한 권한들(Authorities Fingerprint and Photograph)
- 흑백필름(Black and White Film)
- 사진기 렌즈(The Lens)
- 조명에 관한 이론(Theory of Light)
- 35mm 카메라에 대한 소개(Introduction to the 35mm Camera)
- 현장의 깊이(Depth of Field)
- 디지털 이미징(Digital Imaging)
- 물적 증거의 유형들(Types of Physical Evidence)
- 작업장의 위험한 물체들에 관한 정보(Workplace Hazardous Materials Information)

㉡ 지문에 관한 이론(Fingerprint Theory)

자동분류시스템(Printtrak)에 기반을 둔 지문유형인식을 제공한다. 게다가, 다음과 같은 주제들도 교육의 대상이다.

- 마찰용선분석(Friction Ridge Analysis)
- 지문 대조(Fingerprint Comparisons)<sup>136)</sup>

• 지문의 역사 (Fingerprint History)	• 피부조직(Structure of the Skin)
• 능선학(Ridgeology)	• 다공검사법(poroscopy)
• 땀의 구성(Composition of the sweat)	• 손가락, 발가락 길이의 측정(Digit Determination)
• 지문대조(Fingerprint Comparison)	• 보고서 작성(Report Writing)

131)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132)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

133)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

134) [http://www.rcmp.ca/firs/fiatp\\_e.htm](http://www.rcmp.ca/firs/fiatp_e.htm).

135) 필자가 캐나다 연방경찰 ViCLAS 전문수사관을 통하여 입수한 공문서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임.

㉔ 사진에 관한 이론(Photographic Theory)

사진이론은 다음과 같은 주제아래 교육이 이루어진다.

• 사진 화학물질(Photographic chemicals)	• 복사하기(Copying)	• 필름의 관리와 보관(Care and handling of films)
• 디지털 이미징(Digital Imaging)	• 사진컬러의 온도(Colour temperature)	• B&W 여과법(B&W Filtration)
• 부정적인 평가(Negative evaluation)	• 사진기 누르는 과정(Push Processing)	• 플래쉬 조명(Flash illumination)
• 작은 물체의 사진촬영(Small Object Photography)	• 야간사진촬영	• 증거물의 사진촬영(Evidential photography)
• 자외선·적외선 사진촬영(Ultraviolet and Infrared Photography)	• 노출 측정기(Exposure Meters)	• 투시화법(Perspective)

㉕ 실무적 사진촬영(Practical Photography)

개별 교육생들은 다양한 유형의 사진도구와 기법들에 익숙해지도록 설계되어진 일련의 실무적인 연습을 완수해야 한다(75%). 각교육생들은 실제적인 범죄현장조사동안 필요한 5가지의 사진기법을 발전시켜야 한다. 이러한 사진촬영들은 적절한 노출량(exposure), 구성(compositon), 과정(processing), 청결(cleanliness)에 대해 평가한다(25%).

㉖ 범죄현장에 관한 이론(Crime Scene Theory)

범죄현장이론에 관한 시험을 치른다. 교육생들은 범죄현장조사를 진행하면서 법의학·감식 수사관에 의해 행해진 다양한 기법들을 제공받는다.

- 법적·과학적 연계(Legal and scientific implications)
- 증거 도표들(Evidence charts)
- 사체에 관한 신원확인(Identification of the deceased)
- 범죄현장의 위생과 보전(Crime scene health and safety)
- 파우더와 화학물질을 이용한 지문감별(Detection of fingerprints powders and chemicals)
- 사체의 지문채취와 적절한 관리(Fingerprinting and proper handling of cadavers)
- 거시적인 사진촬영의 소개(Introduction to macro photography)
- 자동차 타이어 대조와 식별(Vehicle tire comparison and identification)
- 증거물의 탐색·인식·수집·관리(Search, recognition, collection and handling of exhibits)
- 2차원·3차원적 흔적들의 발견과 식별  
(Recovery and identification of two and three dimensional impressions)
- 범죄현장의 보호와 기록(Protection and recording of the scene)

136) 심사를 받을 때, 개별 교육생들은 모의범죄현장에 남겨져 있던 지문 10개 중 최소한 7개를 정확하게 식별해 낼 수 있도록 요구되어진다. 모의범죄현장의 지문들은 30개의 잠재지문들 중 하나만 채집해내도록 요구된다. 이 대조심사에 대한 준비로서,

- 감정가의 증언에 관한 소개  
(Presentation of expert evidence)
- 지문사진촬영(Fingerprint photography)
- 혈흔유형해석(Bloodstain pattern interpretation)
- 물은 자국(Bite marks)
- 계획 설계(Scale plan drawing)
- 범죄현장비디오 입문  
(Introduction to crime scene video)
- DNA의 채집과 처리과정  
(DNA Collection and Processing)

연방경찰의 법의감식훈련프로그램 (Forensic Identification Apprentice Training Program)은 법과학적 수사에 있어서 능력있는 신뢰할만한 실무가들이 되는 데 필요한 기술, 지식 그리고 경험을 경찰관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된 프로그램이다. 同훈련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경찰관들에게는 「공인법의

감식전문가」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공인법의감식전문가」들은 아주 뛰어난 수준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다. 이러한 전문가과정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생들은 반드시 그들의 능력을 검증 받아야 한다.<sup>137)</sup>

(2) 연방경찰학교과정(Training Academy)

126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연방경찰(RCMP)은<sup>138)</sup> 수사경찰관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94년부터 연방경찰 학교에서 「캐나다법집행관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sup>139)</sup> 현재까지 5,000여명의 연방, 주 및 지방자치체 경찰관들이 관련 교육을 수료한 바 있다. 심지어는 스페인, 하이티, 호주, 미국의 법집행공무원들까지 교육을 받고 있다.<sup>140)</sup>

특히 집중화된 훈련과정에 포함된 법과학

각 교육생들은 최소한 모의범죄현장의 100개의 지문들을 찾고, 비교하여 정확하게 식별해내야 한다. 교육생들의 교육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모니터링되며, 대조시험과 함께 완결된다.

- 137) • 연구, 테스트 그리고 과학적 자료들의 평가
- 최근의 지문자동확인시스템에 부응할 수 있는 지문패턴의 확인
  - 범죄현장분석
  - 분석할 모든 형태의 법의감식적 증거를 수색하고, 이해하고 발견하기
  - 증거주적을 위하여 물리적 그리고 화학적으로 범죄현장을 조사하고, 현출하기
  - 지문증거를 세심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기
  - 물리적 증거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비교하고 확인하기
  - 사진촬영 및 측정을 통하여 증거를 정확하게 기록하기
  - 법과학적 실험분석을 위하여 증거를 수색하고 인식하고 발견하기
  - 기술적 증거보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기
  - 증거서로서 제출될 수 있도록 차트, 그림 그리고 사진형태로 증거를 제시할 준비하기
  - 지문과 물리적 증거를 비교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 법정에 증거를 제출하기.

138)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의 약자.

139)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l/crs_e.htm).

일반법집행과정(General Law Enforcement Courses), 토착원주민(인디언)대상 경찰활동과정(Aboriginal Policing Courses), 전문운전훈련과정, 무기사용훈련과정, 방어전술과정(Defensive Tactics Courses), 연습 및 훈련과정, 전입자 기술훈련과정(Transferable Skills Courses), 집중화된 훈련과정(Centralized Training Courses) 등이다.

치안 논단 6

전문화 과정에서는, 기본법의감식, 고급 법의감식, 법인터뷰기법들, 혈흔패턴인식, 범죄현장 비디오촬영, 형광기계활용법 등의 강좌가 진행된다.

5. 영국경찰 사례

본항에서는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국립훈련센터(National Training Center for Scientific Support to Crime Investigation)에서 개설한 수사 경찰관전문화 과정을 주로 소개한다.

1) 국립훈련센터 소개

국립훈련센터는 범죄수사에 대한 과학적 지원을 위하여 1990년 1월 1일 Har-perley Hall에 설립되었다.<sup>140)</sup> 영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법과학 교육현장이 되었다. 국립지문 감식훈련 프로그램은 1992년에 처음 개설되었으며, 그리고 나서 최근에 Aykley Heads, Durham에 소재하는 Centrex 국립훈련 센터에 담당업무가 부여되었다. 직무수행 능력에 관한 전문적 기준에 대하여 꾸준한 발전과 확립을 보증하고 있다.

2002년이래 국립훈련센터는 중앙경찰훈련 및 개발부서의 일부가 되었다. 국립훈련 센터는 지금에 와서는 "Centrex NTC"로 불린다. Centrex는 직업에 대한 평생학습 기회들과 경찰활동에 대한 발전과 일관성을 가져올 수 있도록 계획된 실무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통하여, 훌륭한 경찰활동을 개념 정의하고, 발전시키고 향상시키고 있다.<sup>142)</sup>

2) 범죄현장수사관 훈련 프로그램

범죄현장 수사관 훈련프로그램은 다음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sup>143)</sup>

- (이상적으로는 1개월 동안) 범죄현장에서 절차와 업무에 관한 입문. 이것은 교육생들에게 교육이 완료된 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초기 9주 동안의 훈련과정에서는 사진촬영기법과 증거추적과 관련된 이론과 실무를 제공한다.
- 법과학 실험실에 정식으로 방문하는 것과 더불어, 범죄수사관 자신의 힘으로 범죄현장에서 2년 동안 직무경험을

140)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1/crs\\_e.htm#Forensic](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1/crs_e.htm#Forensic).  
 141)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overview.html>.  
 142)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overview.html>.  
 143)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intro.html).

축적하기.

- 보다 더 발전된 기법들과 기술들을 소개해주고 범죄현장 수사관훈련과정 초기에 익힌 감각을 통하여 처리되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어줄 2주간의 심화과정에 참석하기.
- 기술분야를 재평가하고 최신기술 및 수사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5년마다 새롭게 해주는 2주간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추가적으로 양적 범죄(Volume Crime)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개설하고 있는 바,

-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Volume Crime Scene Investigators: VCSI)을 위한 3주간의 기본교육은 DNA 증거 및 지문 증거에 대해 초점을 두고, 주거침입절도와 자동차범죄를 수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그러한 원칙들을 다룬다.
-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들을 위한 전환배치 과정

독립적인 범죄현장수사관 수준으로 교육생들을 이끌어 주기 위하여 대량범죄

현장수사관들의 현존하는 기술들을 강화시킬 4주간의 교육과정이다.

(1) 범죄현장 초동수사관 양성과정 (initial crime scene investigator)

주거침입절도, 사람에 대한 범죄, 범죄와 관련이 있는 자동차 그리고 법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범죄현장으로부터 증거를 발견하는 것과 대량범죄에 주로 강조점을 둔 채, 범죄현장수사관에게 필요한 기본기술들을 교육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증거발견에 있어서 훌륭한 실무와 Health & Safety 절차들이 또한 다루어진다.<sup>144)</sup> 이러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광범위한 범죄현장 조사능력, 증거발견과 이해력 강화, 증거물에 대한 의견교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범죄현장 수사관으로 새로 임명받은 경찰관 혹은 그러한 새로운 역할을 위한 수사관들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다. 교과과정은 9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144)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1.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1.html). 사진촬영단계: 35mm나 중간정도의 Format 카메라를 사용함으로써, 범죄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하기; 신발자국, 궁구흔과 다른 목적물에 관한 실제크기의 사진촬영하기; 범죄현장, 부검, 사고 및 상해에서 플래시를 사용함; 빛에 관한 어려운 조건하에서 필터를 사용하여 사진촬영 그리고 필터사용; 법원과 관련된 법률과 실무를 이해하기; 추적증거와 결부된 증거들; 계속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샘플을 정확하게 포장하고 보존한다; 증거추적과 발견 그리고 교환에 대한 원칙; 표시도구 및 축음적의 발견; 잠재적인 생물학적 증거; 銃器를 사용한 사건과 관련된 샘플의 발견; 현장감식의 완성과 실험실 제출용 서류양식; 약물에 관한 일반적 이해; 폭발물과 관련된 일련의 시나리오를 추적하는 기본절차 이해; 범죄와 관련된 차량 조사; 증거평가; 화재사건현장조사 이해; 주요한 범죄현장 기술원칙; 지문채취용 분말사용(파면, 과일과 금속); 분말로 된 흔적의 발견; 지문촬영(이론과 실무); 기본지문이론(유형과 확인원칙들); 손가락지문과 손바닥지문의 채취(기소목적 및 제외); 사체에 대한 지문의 채취(이론); 형광기계를 이용한 조사와 화학적 강화를 위한 적당한 표면의 확인; 지문과 관련된 법률; 법정에서 증거의 준비 및 제출; 지문자료 보관부서의 기능.

(2) 범죄현장수사관을 위한 발전과정 (development crime scene investigator)

범죄수사관의 기본지식과 실무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무기류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화재사건 및 현장에 대한 수사를 포함하여 특별한 전문영역에 대한 수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sup>145)</sup> 2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경찰관들을 위한 것이다. 과학적 수사 지원기법에 대한 공식적인 훈련을 받아 보지 못한 범죄현장 수사관들에게도 이 과정이 제공된다. 이 과정은 Durham 대학에 의해서 인증을 받으며, 2주간에 걸쳐 진행된다.

(3) 범죄현장수사관 (활성화) 재교육과정 (refresher crime scene investigator)

최선의 실무, 건강과 안전문제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현장수사관들의 지식과 실무 기술들을 새롭게 하고, 향상, 발전시킴으로써, 경험있는 범죄현장수사관들을 자극하고 장려하기 위한 2주 교육과정이다.<sup>146)</sup> 항상 변화하는 과학적 수사 지원기법과 새로운 기술적 발전이라는 성질 때문에, 모든 범죄현장 수사관들은 매 5년마다 이 교육과정에 참가하는

145)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2.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2.html).  
146)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3.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3.html).  
147)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4.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4.html)?

• 범죄현장과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확한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 법과학적 그리고 지문증거들에 대한 확인, 발견, 포장과 표시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증명; 법과학적 증거를 정확하게 저장하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에 대하여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증명하기; 복잡한 노트와 진술서를 완성하기; 형사법정에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지식, 신뢰 기술을 발전시키기.

것이 권장되고 있다. 교육과정을 이수함으로써, 경험이 있는 현장수사관들에게는 범죄현장 수사에 관한 Durham대학의 학위를 취득하는 통로가 된다.

(4)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 양성과정 (volume crime scene investigator)

범죄현장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 범죄현장 조사, 발견된 모든 증거의 통합유지 및 법정에 증거물을 제출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교육과정이다.<sup>147)</sup> 양적인 범죄 유형을 처리할 수사부서에 새로이 배치된 현장수사경찰관들을 위해서 개설된 교육 과정이며, 기간은 3주간이다.

(5) 양적 범죄 현장수사관 전환교육과정 (conversion VCSI course)

동교육과정은 3주간의(대량) 범죄현장 수사관 양성과정을 이수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독립적인 범죄현장수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4주간이다.<sup>148)</sup>

3) 과학적 수사지원을 위한 관리 및 조정관 양성과정 (management and co-ordination of scientific support)

중요 사건 발생시 범죄현장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범죄현장수사관으로서 경험을 쌓게 하는 것이다.<sup>149)</sup> 경험이 있는 범죄현장수사관, 관리 혹은 조정자의 역할을 할 직책에서 근무할 수사관들을 위한 1주 교육과정이다.

4) 지문수사관 양성과정 (national fingerprint examiner)

동교육과정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바, 기본입문과정, 중급과정 및 고급과정이다.<sup>150)</sup>

▶ 기본입문과정 (The Foundation Course)

국립지문분석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기본지식에 대한 훈련, 사무실업무에 관한 원칙들, 지식과 능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새로이 배치된 참모부서 직원들을 위해 마련된 4주간의 교육과정이다.<sup>151)</sup>

▶ 중급과정(The Intermediate Course)

일반적인 교육주기에 접근할 수 없는 참모부서 직원들을 위해서 개설된 것인 바, 사무실 업무에 관한 약간의 경험, 전문가적 지위를 얻으려는 잠재적인 직원들에게 그러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과정이다. 기본입문과정에 출석하는 것은 동교육과정 입학의 선행 조건이다. 참모부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며, 3주 과정이다.

▶ 고급과정(The Advanced Course)

전문가적 지위를 부여받기에 합당한 후보자들을 위하여 마련된 교육과정이다. 목적은 법정에서 각 교육생들이 지문을 제시·증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지문분석전문가 양성을 위한 3주짜리 교육과정이 제공되는 바, 국립지문분석시스템 훈련, 십지문 날인 운용자, 응선학 과정이다.

그리고 지문분석시스템과정은 지문분석 시스템의 활용에 대한 완결 교육이다. 십지문 채취 업무자는 21~22일간이며, 지문분석수사관 과정은 41~42일간 교육을 받는다. 십지문 채취 담당자 과정은 마찰응선, 유형의 정의,

148)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5.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5.html).

149)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2\\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2_intro.html). 중요한 사건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필요한 부분과 우선적인 절차 평가하기; 건강과 안전에 관한 이슈를 찾아내기; 범죄현장에서 스텝진을 지원하고, 관련된 필요사항 찾아내기; 범죄현장관리를 위하여 중요한 논점을 제공하기; 범죄현장에서 방침과 행동을 기록하기; 모든 오염된 것과 노출된 이슈 찾아내기.

150)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

151) 지문시스템의 역사와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 마찰응선에 관한 분석, 비교 그리고 평가를 포함하여 지문의 유형을 인식하고 그것들을 분류할 수 있는 능력; 시체를 포함한 지문의 채취 및 기록할 수 있는 능력; 지문분석부서의 역할과 지문의 '전문가' 증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지식; 증거법칙과 지문에 대한 일반적이고 특별한 법칙의 이해; 사무실업무의 기본기술과 원칙에 대한 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참모부서에 새로이 배치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Birmingham 대학과 파트너십을 갖고 진행되는 강좌이다.

6) 영국경찰이 제시하고 있는 바람직한 현장수사관 자질

영국경찰에서는 범죄현장수사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들(skills required to become a crime scene investigator)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범죄현장수사관의 업무라는 것은 자극적이며, 몰입할 수 있는 측면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또한 종종 일상적이고, 반복적이다. 그리고 불만족스럽고 지저분한 일일 수 있다. 이러한 업무에 관해 알아보기 위한 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지역경찰관서의 과학적 수사지원 부서로부터 관련된 업무의 유형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많은 경찰관서들은 하루동안 적합한 인물로 하여금 해당관서의 범죄현장수사관 중의 한 요원을 따라다니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러한 업무 유형이 개별경찰관에게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sup>160)</sup>

훌륭한 범죄현장수사관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관련하여, 적성은 다음과 같은 바, 완벽한 범죄현장수사관과 같은 거의 없다. 부분적으로 각 과학적 수사지원부서들은 지역경찰의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약간씩 다른

160)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general.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general.html).

161)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apptitude.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apptitude.html).

업무실태와 우선순위들을 갖고 있다. 그런데, 다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과 능력들은 성공적인 범죄현장수사관의 중요한 적성들 중의 일부라고 이해될 수 있다:

훌륭한 손놀림, 색맹이 아니어야 하며, 사물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눈, 방법론적 접근, 상황을 분석하고 측면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압력에 대한 신뢰성, 문서 및 구두로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훌륭한 대인관계 기술들, 종종 힘든 상황에서도 오랫동안 유연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적응하고 개선될 수 있는 능력, 개인적으로 혹은 팀의 일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 등이다.<sup>161)</sup>

6. 미국의 일반대학 사례

1) 일반대학의 범의감식교육 전공과정

미국에서는 FBI를 비롯한 각급 법집행기관 뿐만 아니라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범죄사건을 담당할 범의감식요원에 대한 전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수십 개의 일반대학에서는 범의감식분야를 전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놓고 있는 바, 短期자격취득과정(Certificate Program), 2년제(Two Year Undergraduate Program), 4년제(Four Year Undergraduate Program) 혹은

대학원(Graduate Program)전공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California에 있는 Rio Hondo College에서는 범의감식자격취득(Forensic Identification Certificate)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LA에 소재한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는 범죄수사학에 있어서 형사사법학위와 범죄수사학 석사학위(Criminal Justice degree and Master of Science degree in Criminalistics)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는 법과학을 전공한 형사사법학 석사과정을 운영하기도 한다. 그 외 여러 대학에서는 법인류학, 법과학, 법화학, 법생물학, 법감식학 전공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이렇게 대학에서 범의감식분야를 전공한 학생들은 졸업 후, 법집행 기관에서 경찰관, 수사관, 민간전문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sup>162)</sup> 이에 본항에서는 미국 뉴욕시에 있는 John Jay 형사사법대학의 범의학·법과학전공 과정을 사례로 소개한다.

2) 뉴욕 John Jay 형사사법대학 사례

뉴욕시립대학교(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형사사법대학 학부과정 및 동대학원 형사사법학 박사과정(Doctoral

Program)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학부과정에는 경찰학전공(Police Studies), 범죄 및 컴퓨터정보시스템전공, 사법 및 공공행정전공, 교정학, 소방학, 형사사법전공(문학사 및 이학사), 법과학(Forensic Science), 법심리학(Forensic Psychology), 범죄학, 행정학, 민간경비학(Security Management) 등 20여 개 세부전공을 개설하고 있다.<sup>163)</sup> 특히 법과학 및 법심리학전공 커리큘럼을 상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법과학전공과정

범죄수사, 범죄자신원확인, 감식업무, 법률쟁송과 관련된 증거의 평가 및 검증에 대한 과학적 원칙과 실험 및 분석기법의 응용에 관한 교육 및 훈련과정이다. Course Work은 대체로 화학 및 인접분야 전공 즉 생물학, 물리학, 법률, 수학, 범죄수사학, 毒物學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다. 특히 법과학 실험실(범죄수사학, 독물학, 병리학 및 환경예방 시설), 연방, 주 및 지역경찰관서에서 근무할 학생들과 사설 연구소(화학, 약조제업, 보험회사, 독물 및 임상화학실험실)등에서 근무할 학생들을 위해서 개설된 과정이다.

162) <http://www.crime-scene-investigator.net/csi-training.html>.<sup>163)</sup>

<http://web.jjay.cuny.edu/~crjphd/program/specialization.html>

164) Credits required(70) FIRST TWO YEARS All courses required Freshmen Biology 103-104. Modern Biology Chemistry 103-104. General Chemistry Subtotal: 18 Sophomores All courses required Chemistry 201-202. Organic Chemistry Chemistry 220: Quantitative Analysis Law 202: Law and Evidence Physics 203-204. General Physics CRIMINALISTICS TRACK (Last Two years) Subtotal: 23 Juniors Chemistry 302. Physical Chemistry II: Chemistry 315. Biochemistry; Chemistry 320. Instrumental Analysis: Chemistry 321. Instrumental Analysis: Forensic Science 313. An Introduction to Criminalistics for Forensic Science majors Subtotal: 18; Seniors

학생들은 범죄수사학분야와 독물학분야 중 한 분야에 대하여 집중 학습하게 된다. 전공학생들(70학점 이수)은<sup>164)</sup> 석사 및 박사과정에 진학할 수 있다. 학부졸업생들은 법의학, 법의병리학, 치과학 및 정신의학 분야 전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

(2) 법심리학전공과정

심리학과 형사사법시스템간의 관련성에 대하여 주로 흥미를 가진 학생들을 위하여

개설한 과정이다. 심리학이론 및 응용, 관련연구방법론, 학제간연구 분야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학, 사회복지분야, 법집행분야 혹은 다른 형사사법 관련 직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적합한 전공과정이다. 제1 전공필수(16학점), 제2, 3, 4전공선택(각 6학점씩) 등 34학점을 이수토록 하고 있다.<sup>165)</sup>

Forensic Science 401.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ternship; Forensic Science 415. Forensic Science Laboratory; Forensic Science 416. Forensic Science Laboratory;

TOXICOLOGY TRACK (Last Two Years); Subtotal: 11; Juniors Chemistry 302. Physical Chemistry II: Chemistry 315. Biochemistry; Chemistry 320. Instrumental Analysis; Chemistry 321. Instrumental Analysis; Toxicology 313. Toxicology of Environmental and Industrial Agents Subtotal: 18; Seniors Forensic Science 401. Forensic Science Laboratory Internship; Toxicology 415. Forensic Pharmacology; Toxicology 416. Analytical Toxicology; Subtotal: 11 Total: 70

165) PART ONE. CORE COURSES All courses are required Psychology 200. General, Psychology II; Psychology 242. Abnormal Psychology; Psychology 311. Experimental Psychology; Psychology 370/Law 370. Psychology and the Law; Statistics 250. Principles and Methods of Statistics(Subtotal: 16); PART TWO. THEORETICAL FOUNDATIONS OF FORENSIC PSYCHOLOGY Select two courses Philosophy 310/Law 310. Ethics and Law; Psychology 202/Sociology 202. The Family: Change, Challenges, and Crisis Intervention; Psychology 221. Social Psychology; Psychology 228. Psychology and Women; Psychology 231. Child Psychology; Psychology 232. Psychology of Adolescence and the Adolescent Offender Psychology 236. Group Dynamics; Psychology 243. Theories of Personality; Psychology 266. Psychology of Alcoholism; Psychology 268. Therapeutic Intervention in Alcoholism; Psychology 342. Introduction to Counseling Psychology; Psychology 442. Key Concepts in Psychotherapy; Social Science Research 325. Research Methods in the Behavioral Sciences; Sociology 203. Criminology; Sociology 309. Juvenile Delinquency(Subtotal: 6); PART THREE. FORENSIC PSYCHOLOGY ELECTIVES Select two courses Psychology 110/Sociology 110/Anthropology 110. Drug Use and Abuse in American Society; Psychology 235. Social Psychology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sychology 271/Police Science 271. Psychological Foundations of Police Work; Psychology 272. Correctional Psychology; Psychology 275. Family Conflict and the Family Court; Psychology 372. Psychology of Criminal Behavior; Psychology 378. Field Work in Forensic Psychology I; Psychology 379. Field Work in Forensic Psychology II; Psychology 410. Independent Study; Psychology 476. Seminar in the Psychological Analysis of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sychology 477/Sociology 477. Advanced Analysis of Criminal Behavior and the Criminal Justice System; Psychology 477/Sociology 477. Advanced Seminar in Youth, the Family and Criminal Justice(Subtotal: 6); PART FOUR. COGNATE COURSES Select two courses African-American Studies Psychology 240/Psychology 240. Psychology of Oppression; African-American Studies Sociology 121. Problems of the Black Ghetto; Anthropology 310/Sociology 310/Psychology 310. Culture and Personality; Anthropology 315. Systems of Law; Anthropology 330. American Cultural Pluralism and the Law; Anthropology 340. Anthropology and the Abnormal; Drama 325. Techniques in Crisis Intervention; Economics 315/Police Science 315. Economic Analysis of Crime; Government 206. Urban Politics; Government 430. Problems in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History 219. Violence and Social Change in America; History 320. History of Crime and Punishment in the United States; Law 209. Criminal Law; Law 212. The Criminal Process and Code of Criminal Procedures; Literature 327.

(3) 대학원 박사과정

John Jay College of Criminal Justice의 교수진과 대학원 전공교수들이 박사과정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박사과정 프로그램에 따르면, 형사사법, 범죄학 및 법과학 영역에서 학제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론과 경험적 연구 및 규범학적 분석을 결합한 과정이다. 대학원생들이 중점적으로 교육·훈련받는 분야는 사회과학방법론, 연구디자인, 통계학과 자료검색 등이다. 학생들이 범죄학이론, 형법, 형사절차법, 조직행동, 공공정책분석 및 형사사법심리학 등에 관한 배경적 토대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세부전공은 4개 분야인 바, 범죄학과 일탈, 법심리학, 법과 철학 그리고 공공정책과 조직행동 등이다. 형사사법 박사과정은 다양한 아카데미한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 바, 인류학, 역사, 법률, 철학, 정책과학, 공공행정, 심리학 및 사회학 등이다.

특히 법과학 세부전공은 생물학, 생물화학 그리고 화학분야 전문교수들이<sup>166)</sup> 강의를 맡고 있다. 법과학 집중과정에서는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범죄수사학, 분광학(spectroscopy), 독물학, 혈청학(serology), 유전학적 분류법 강좌가 개설되어 있다. 법과학 전공자에게는 일반화학, 조직화학, 미적분학,

물리학, 통계학, 생화학, 물리화학 강좌를 수강토록 하고 있다.

VI. 결론

형사소송절차의 이념 중에 하나는 실체적 진실발견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적법절차를 통한 인권보장이다. 이 두 가지 이념이 서로 잘 조화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한국의 형사사법기관이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다.

실체적 진실발견과 적법절차의 보장을 가능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과학적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수사단계에서 빚어진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와 몇몇 무죄판결 사건들은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치명적인 불신을 초래하였다.

이에 필자는 한국 수사경찰의 과학적 수사기반 구축을 위한 국제적 비교연구를 통하여 제도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입수, 비교·평가·연구하기에 이르렀다.

각국의 경찰제도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의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지만, 경찰관 신규 입직과정에서 개설된 경찰교육은 내용이나

Crime and Punishment in Literature; Philosophy 102. Introduction to Ethics; Police Science 306. Police Work with Juveniles; Police Science 405. Organized Crime in America; Psychology 213/Sociology 213. Race and Ethnic Relations; Psychology 224/Anthropology 224/Philosophy 224/Sociology 224.; Death, Dying and Society: A Life Crises Management Issue; Sociology 216. Probation and Parole: Principles and Practices; Sociology 240. Social Deviance; Sociology 301. Penology; Sociology 302. Social Problems(Subtotal: 6).

166) Peter DeForest 교수는 법과학전공이며 증거추적 및 범죄현장수사 전문가이다. Gwendolyn Gerber교수는 법심리학을 전공자이며, 경찰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성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성적 학대 및 가정내 폭력문제를 다루고 있다. Robert Shaler 교수는 법생물학을 전공하였으며, DNA프로파일링과 범죄현장 재구성을 담당하고 있다.

기간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순경급 기본교육의 경우, 독일은 30개월, 캐나다 9개월, 스위스 15개월이며, 한국은 겨우 6개월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신규교육과정에서 개설된 범죄수사 및 과학수사에 대한 기본 강좌 역시 한국경찰의 경우, 선진 각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수사부서에 근무하게 될 일반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화 교육과정의 경우 최근 들어 「수사보안연구소」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감-경정급 수사간부 교육과정은 6개월 정도로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있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경위이하 실무자를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은 대체로 2주~2개월 정도로 매우 짧다.

일반대학의 법과대학 및 의과대학의 「법의학강좌」 개설동향에 의하면, 서울대 법과대학에서는 同강좌를 선택과목으로 개설해놓고 있지만, 여타의 법과대학에서는 그러한 경향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의과대학내 법의학강좌는 일반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서울대·연세대·고려대·경북대의 경우 3명 전후의 전공교수들이 강좌를 담당하고 있다.

최근 경북대에서 설치한 특수대학원 형태의 「수사과학대학원」은 향후 한국의 법의학 교육 및 과학수사기반 구축에 주요한 시급성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독일의 법과대학에서는 법의학강좌를

비롯한 범죄수사학강좌까지 개설하고 있는 경향이며, 의과대학이 설치된 대학에서는 대부분 법의학연구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관내에서 발생한 변사사건에 대한 법의학적 부검, 검시, DNA 분석, 독물분석 등에 이르는 다양한 법과학적 분석이 일반 의과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법의학연구소에는 법의학·법과학 전문가 15명과 3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수사경찰이 되기 위한 전문화 교육과정의 경우, 계급불문하고 “33주”에 걸친 장기간의 이론 및 실습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수사경찰의 간부화 추진경향은 참고가 될만하다.

캐나다의 경우, 일반대학 범죄학부에 법과학분야 일부 강좌가 개설되어 있고, BC州 공과대학·토론토대학 등에서는 법의학분야 전공과정을 개설해 놓은 상태이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은 법의관사무실, 경찰, 법원, 사설연구소 등지에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연방경찰학교 및 경찰대학에서도 법의학분야 전문가 양성과정을 설치, 각급 법집행기관 요원들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연방경찰에서 운용하고 있는 법의학 초보자를 위한 훈련프로그램은 무려 48개월에 이르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과 교육내용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영국의 경우 국립훈련센터(NTC)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법의학 감식 훈련 프로그램은 내용의 전문성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현장수사관양성과정, 사진촬영, 단계별 지문분석과정, 화재감식, 얼굴식별과정 및 법고고학과정까지 개설하고 있다. 경찰교육 기관에서 법의학분야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수십 여개의 일반대학에서 법의학·법과학 관련한 전문자격 프로그램, 2~4년제 학위과정 및 대학원 전공과정까지 개설하고 있어, 법의학 교육은 일반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범죄수사 실무영역 차원이 아니라 학문적 영역으로 인정받고 있다. 한국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교육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형사재판에서 증거법원칙이 엄격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과학적 수사를 통한 증거수집과 이를 통한 사실인정의 요구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초동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법경찰관의 과학적 수사자세는 전문화된 교육과 인사관리 방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 각국의 제도에 대해서 일별해 보았다. 참고할만한 제도도 있었지만, 당장 한국에 활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우선적으로 경찰교육을 통하여 수사직무의 전문성을 적극 향상시키고, 근무방식 개선과

인사관리(승진, 전보) 패턴을 개선하여 직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강좌는 일반대학과의 연계를 통하여 우수한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일반대학의 그러한 시도는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최근 전국에 80여개 대학에서 경찰(행정)학과를 설치하여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있다.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과학수사분야 및 법과학 전공강좌를 확대하고,<sup>167)</sup> 이러한 전공과정을 수료한 者에게 수사경찰 부서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이다.

Hans Gross가 범죄수사학을 소개한지 어언 100년이 넘었지만, 「범죄수사학(Kriminalistik)」은 아직도 실무분야(Praxis)에 머물러 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명실상부한 학문적 위상을 갖고 있다. 의과대학에서 법의학은 기초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비하여 선호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근자에 들어와서 법의학동호회, 법의학회, 법과학회 등 학술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를 계기로 한국경찰의 과학수사 기반구축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전개되었으면 한다.

167) 법의학, 약학, 생물학, 화학, 고고학, 곤충학, 인류학, 심리학 전공이 개설된 대학에서는 경찰(행정)학 전공자들로 하여금 관련분야를 부전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 참고 문헌

1. 국내문헌

경찰청. 「2003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 서울: 경찰청, 2003.  
 경찰청. 「2003년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요구자료(1)». 서울: 경찰청, 2003.  
 광대경. "경찰수사를 위한 범죄심리연구의 활용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 3호」.  
 용인 : 한국경찰학회, 2001.  
 백형구. 「刑事訴訟法講義」. 서울: 박영사, 1994.  
 이상덕. 「법의학」. 서울: 최신의학사, 1987.  
 유명찬. 「법과학과 수사」. 서울: 현암사, 2002.  
 이삼재. 「科學搜查入門」. 서울: 정문출판사, 1983.  
 이재상. 「형사소송법」. 서울: 박영사, 1999.  
 임준태. "독일경찰교육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1호」, 1999.

2. 외국문헌

Lim, Joon-Tae. Verbrechensbekämpfung durch die vorbeugenden Maßnahmen der Polizei. Aachen: Shaker Verlag, 1999.  
 Burstein, Harvey, Criminal Investigation An Introduction.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ntice Hall, 1999.  
 Janet L. Jackson/Debra A. Bekerian. "Does Offender Profiling Have a Role to Play?", in: Offender Profil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et. al: John Wiley & Sons, 2001.  
 O.W. Wilson, et al., Police Administration. New York et al.: McGraw-Hill Companies, inc., 1997.  
 Rupprecht (Hrsg.), Polizei Lexikon, 2. Aufl., 1995.  
 Seagrave, Jayne. Introduction to Policing In Canada, 1997.  
 Turvey, Brent, Criminal Profiling. San Diego et. al.: Academic Press, 2002.  
 Weiland, Bernd, Einfuehrung in die Praxis des Strafverfahrens, 2. Aufl., 1996.  
 Wirth/Strauch, Rechtsmedizin, Heidelberg: Kriminalistik Verlag, 2000.

3. 신문기사

동아일보 2001년 05월 30일 27면 등; 세계일보 2002년 09월 30일 22면 등  
 월간조선 1999년 2월호; 조선일보 1996년 06월 26일자.  
 중앙일보 1997년 06월 21일 6면 등; 한국일보 2003년 02월 27일 29면 등

4. 인터넷자료

<http://www.ncpa.go.kr/newpol/newpol2.htm>,  
 『2003년도』간부후보생 신입교육과정 in: <http://www.pca.go.kr/>  
<http://www.zsps.ch> 2000.08.02.  
[http://kr.ks.yahoo.com/service/question\\_detail.php?queld=289133](http://kr.ks.yahoo.com/service/question_detail.php?queld=289133).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7570>.  
[http://board1.chol.com/board/servlet/board?boardid=NET\\_WEBNEWS\\_1&cmd=READ&page=1&gubun=&idnum=32](http://board1.chol.com/board/servlet/board?boardid=NET_WEBNEWS_1&cmd=READ&page=1&gubun=&idnum=32).  
<http://org.catholic.or.kr/chrc/t-main2-1.htm>.  
<http://www.kifos.com/fos/fos.htm.html>.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c-class.html>.  
<http://www.nisi.go.kr/>  
<http://kr.search.yahoo.com/search?fr=kr-front&p=%B9%FD%C0%C7%C7%D0>.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73934>.  
<http://www.nisi.go.kr/>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4406>.  
<http://user.chollian.net/~shinss/forensic/fs-1.html>.  
[http://law.snu.ac.kr/Information/info\\_process.asp](http://law.snu.ac.kr/Information/info_process.asp).  
[http://medicine.snu.ac.kr/professor/main3\\_sub03.asp#p01](http://medicine.snu.ac.kr/professor/main3_sub03.asp#p01).  
[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subject/law/intro\\_subject/contents.asp?con\\_no=734&sub\\_no=0&page\\_no=1](http://medicine.yonsei.ac.kr/class_subject/subject/law/intro_subject/contents.asp?con_no=734&sub_no=0&page_no=1).  
<http://pathology.yonsei.ac.kr/student/2003%20법의학%20강의계획표.htm>.  
<http://www.korea.ac.kr/~leg-med/intro.htm>.  
<http://www.korea.ac.kr/~leg-med/staff.htm>.

- [http://www.kyungpook.ac.kr/index11\\_grad.html](http://www.kyungpook.ac.kr/index11_grad.html)
- <http://www.cuk.ac.kr/>
- [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title=법의학](http://www.hanyang.ac.kr/search/gwamok/detail.phtml?haksu_no=MED331&cd=H3HBDC&title=법의학)
- <http://www.jura.uni-freiburg.de/fs/alt/files/kvv/kvws962.htm>
- <http://www.uniklinik-freiburg.de/i/rme/de/auw/index.xml>
- <http://www.med.uni-heidelberg.de/einrichtungen/rechtsmedizin/index.html>
- <http://www.med.uni-heidelberg.de/rechtmed/organigr.htm>
- <http://www.sfu.ca/criminology/facstaff.htm>
- <http://www.sfu.ca/criminology/Ofs033.html>
- <http://www.erin.utoronto.ca/~w3fsc/>
- <http://www.erin.utoronto.ca/~w3fsc/DoubleMajorProgram.htm>
- [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http://programs.bcit.ca/program.php3?program=pt_btech_comp_02)
- [http://www.cpc.gc.ca/scienc\\_e.htm](http://www.cpc.gc.ca/scienc_e.htm)
- [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http://www.cpc.gc.ca/sciences/ficour_e.htm)
-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fic_e.htm)
-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sfic_e.htm)
-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bbprc_e.htm)
- [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http://www.cpc.gc.ca/courses/descript/hfcc_e.htm)
- [http://www.rcmp-grc.gc.ca/firs/fiatp\\_e.htm](http://www.rcmp-grc.gc.ca/firs/fiatp_e.htm)
-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crs\\_e.htm](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crs_e.htm)
- [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crs\\_e.htm#Forensic](http://www.rcmp-grc.gc.ca/clet/cletweb/cat/crs_e.htm#Forensic)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overview.html>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1_intro.html)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2\\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2_intro.html)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3_intro.html)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intro.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courses_04_intro.html)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general.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general.html)
- [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apititude.html](http://www.forensic-training.police.uk/skills_apititude.html)
- <http://www.crime-scene-investigator.net/csi-training.html>
- <http://web.jjay.cuny.edu/~crijphd/program/specialization.html>
- <http://www.jjay.cuny.edu/programsUndergraduate/progUndeGradBacc.asp>



## 경찰과 시민의 아동학대 인식도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 박 영 주\*

### I. 서론

우리 사회는 그 동안 아동 및 청소년에 의한 범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왔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아동 및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이루어지고<sup>1)</sup>, 이러한 학대행위는 아동 훈육의 한 방편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어 그 접근이 더욱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부모에 의한 아동 학대가 증가하고 있어 신고건수가 증가하는 등

아동학대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sup>2)</sup>.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정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금지행위 및 신고의무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대한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대아동에 대한 보호체계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법을 기반으로 하여 현재 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가 형성되었으며, 해마다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아동학대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정도와 그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판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듯 하다. 한 예로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의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1)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조사한 2002년도 전국 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에 의한 학대행위가 84.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2004년 8월 28일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아이를 때리거나 굶기는 아동학대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을 상반기 전국 36개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아동학대 사례는 32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28건보다 34%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 건수중 학대로 확인된 경우도 159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증가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 중 2001년의 경우를 살펴보면, 서울에서 접수된 657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74건이, 대구에서 접수된 68건의 아동학대 사례 중 25건이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의 경우 약 12%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데 비해 대구의 경우 26%가 무혐의 판정을 받는 것으로, 지역별 사례판정의 일관성이 부족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지역별 아동학대의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아동학대 사례판정 및 아동학대 대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울과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일반시민과 경찰들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정도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의 아동복지법규정의 인지와 업무수행간의 활용정도를 조사하여 법규정의 유용성 정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만족도 및 역할기대도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아동학대 대처 방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다.

3) Fontana는 아동학대란 아동에 대한 부적절한 보호(maltreatment)로서 여기에는 정서적 박탈, 방임, 영양부족이 포함되며, 부적절한 아동양육의 한 극단적인 형태로 보았다(Kempe & Ray, 1972, pp. 83-103)

4) 이는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아동학대에방및치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와 방임은 아동의 복지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의해서 발생하는 아동에 대한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성적 학대나 착취, 부주의한 치료나 학대 그리고 의학적 치료의 중단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가 해롭게 되거나 위협받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라고 정의한다(Flowers, 1994, p. 5).

## II.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

### 1. 아동학대의 개념

아동학대의 개념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서, 그리고 학문적 관점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어왔다. 일반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아동학대를 정의하고 하고 있는데, 의학적 접근, 법적 접근, 사회복지적 접근이 그것이다. 의학적 접근<sup>3)</sup>에서는 외부적 상처를 중요시 한 반면 성적 학대 및 정서적 학대 방임 등의 학대유형은 간과하였다.

법적 접근과 사회복지적 접근에서는 양자 모두 다양한 유형의 학대를 언급하고 있으나, 전자는 부모 및 보호자의 책임 해태에 대한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후자는 처벌보다는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학대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오늘날 아동학대를 정의함에 있어 그 유형을 신체적·정신적·성적학대와 방임 등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의 경우 2000년 1월 12일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유형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한다. 여기서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로 아동의 부모를 포함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 1호에서 11호에 걸쳐 제시되어 있다.<sup>5)</sup>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4가지 유형에 맞추어 아동학대를 구분하여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한 아동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한 방임행위」라고 정의하기로 한다.

### 2. 아동학대의 유형

#### 1)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방치한 모든 행위로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때밀고 움켜잡는 행위, 물건을 사용하여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멍, 화상, 골절, 장기 파열 등의 신체손상이 발생한다.

〈표 1〉 신체적 학대 유형

(단위 : 건, %)

연도	외상 없음	명등	규합	꼬집 힘	찢김	골절	찢림	물어 들김	목 조름	뽕점 질림	아동 던짐	고막 파열	화상	호흡 곤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뇌 손상	기타	전체
2001	53 (4.1)	743 (57.7)	181 (14.1)	64 (5.0)	44 (3.4)	34 (2.6)	23 (1.8)	20 (1.6)	26 (2.0)	2 (0.2)	4 (0.3)	-	9 (0.7)	5 (0.4)	8 (0.6)	5 (0.4)	13 (1.0)	52 (4.1)	1,288 (100.0)
2002	501 (35.8)	447 (32.0)	126 (9.0)	40 (2.9)	66 (4.7)	37 (2.6)	11 (0.8)	8 (0.6)	16 (1.1)	12 (0.9)	19 (1.4)	6 (0.4)	23 (1.7)	3 (0.2)	8 (0.5)	4 (0.3)	11 (0.8)	60 (4.3)	1,388 (100.0)
2003	658 (46.4)	547 (38.5)	-	-	80 (5.6)	32 (2.3)	-	-	-	5 (0.4)	-	3 (0.2)	10 (0.7)	5 (0.4)	9 (0.6)	4 (0.3)	6 (0.4)	60 (4.4)	1,419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2002a, p. 14; 보건복지부, 2003, p. 21, 보건복지부, 2004, p. 26 재구성

5) 1.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2.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3.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4.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아동을 타인에게 매매하는 행위 6.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된 아동학대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는 전반적으로 해마다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2001년에 아동에게 가장 많이 가해진 신체적 학대는 멍이 들도록 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전체의 57.7%를 차지하였다. 2002년 및 2003년에는 외상이 없는 학대가 2001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여 전체 신체적 학대의 35.8%, 46.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상이 없는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아동에게 물건 등을 던졌으나 다행히 아동이 그것에 맞아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될 것이다. 비록 외상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상황에 노출되는 아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001년에 비하여 심각한 신체적 손상, 즉 고막 파열이나 화상, 아동을 던지는 등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아동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보인다.

2) 정서적 학대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정신적·심리적 학대라고도 하며 보호자나 양육자가 아동에게 언어적·정서적 위협·감금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아동의 인격이나 감정 또는 기분을 심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위,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놓는 행위, 원망적·적대적·경멸적인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등을 들 수 있다. 정서적 학대는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상해의 흔적은 없으나 아동의 정서적 불안·대인관계 장애 등의 중대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

〈표 2〉 정서적 학대 유형

(단위 : 건, %)

연도	내용	소리지름	무시	심한욕설	내쫓거나 죽이겠다고 위협·협박	흥기위협	아동에대한 비현실적기대	웃밧겨 내쫓음	감금	기타	전체
2001		325 (30.9)	103 (9.8)	340 (32.3)	113 (10.7)	5 (0.5)	44 (4.2)	6 (0.6)	33 (3.1)	88 (8.4)	1,052 (100.0)
2002		656 (35.0)	123 (6.6)	482 (25.8)	205 (11.0)	77 (4.1)	98 (5.2)	18 (1.0)	55 (2.9)	158 (8.4)	1,872 (100.0)
2003		792 (34.2)	161 (7.0)	561 (24.3)	61 (2.6)	152 (6.6)	111 (4.8)	-	37 (1.6)	435 (18.9)	2,310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2002a, p. 15; 보건복지부, 2003, p. 23; 보건복지부, 2004, p. 27 재구성.

정서적 학대는 아동학대의 유형 중에서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의 정서적 학대 신고건수는 1,052건이었으나, 2002년의 경우는 1,872건으로 약 2배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2003년에는 2,310건으로 괄목할 만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1년과 비교하여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정서적 학대의 경우는 흥기위협이 약 12배, 30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옷을 벗겨 내는 경우도 2002년에 약 3배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해가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정서적 학대의 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학대일지라도 그것이 아동에게는 큰 상처가 될 것임을 우리 국민들이 점차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성적 학대

성적 학대는 성인이 성적인 충족을 위해 미성숙한 아동과 함께 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즉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기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행위, 포르노물을 보여 주거나 판매하는 행위, 아동매춘·매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경찰청, 2002, p. 158).

〈표 3〉 성적 학대 유형

(단위 : 건, %)

연도	내용	성추행	성기삽입	구강성교	매춘	포르노그래피	성관계 노출	성놀이	기타	전체
2001		93 (61.2)	33 (21.7)	8 (5.3)	-	6 (4.0)	2 (1.3)	-	10 (6.0)	152 (100.0)
2002		87 (48.9)	28 (15.8)	11 (6.2)	2 (1.1)	10 (5.6)	12 (6.7)	16 (9.0)	12 (6.7)	178 (100.0)
2003		162 (63.2)	35 (13.6)	17 (6.6)	0 (0.0)	5 (1.9)	10 (3.9)	16 (6.2)	12 (4.7)	257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2002a, p. 15; 보건복지부, 2003, p. 23; 보건복지부, 2004, p. 29 재구성.

성적 학대 역시 2001년과 비교하여 2002년과 2003년의 경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02년에는 아동매춘행위, 아동에게 포르노그래피를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을 성관계에 노출시키는 행위 등, 2001년에 비하여 두드러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및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리고 아동학대 가해자와 학대아동간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성적 학대의 경우는 대부분이 친부를 포함하여 주로 아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앞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학대 예방교육의 시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4) 방임

방임이란 아동에게 적절히 취해야 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범하는 소극적 형태의 학대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보호자가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아동에 대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물리적 방임으로,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양육 태만을 의미하며 통상 정서적 방임과 동시에 발생한다.

둘째, 정서적 방임으로서 아동에게 필요한 정서적 지지 혹은 보호의 결핍을 의미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애정결핍이나 무시로부터 발생한다.

셋째, 교육적 방임으로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을 이행하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허용하는 행위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넷째, 의료적 방임으로 예방 접종을 제때 하지 않거나 필요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등, 의료적인 보호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적 방임은 부모·성인의 성관계·성관련매체 등에 노출되도록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 성적 방임이 방임의 유형에 포함될 수 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를 성적 학대의 유형에 포함시켜 논의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논문에서도 성적 방임을 성적 학대에 포함시켰다.

〈표 4〉 방임 유형

(단위 : 건, %)

연도	내용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가출아동 찾지 않음	호적에 올리지 않음	기타	전체
2001		703 (53.1)	351 (26.5)	97 (7.3)	140 (10.6)	17 (1.3)	16 (1.2)	1,324 (100.0)
2002		986 (53.1)	428 (23.0)	148 (8.0)	163 (8.8)	57 (3.1)	75 (4.0)	1,857 (100.0)
2003		1,168 (56.4)	486 (23.5)	146 (7.1)	152 (7.3)	35 (1.7)	83 (4.0)	2,070 (100.0)

※ 자료: 보건복지부, 2002a, p. 16; 보건복지부, 2003, p. 25; 보건복지부, 2004, p. 30 재구성.

방임의 유형 중에서는 물리적 방임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에 보내지 않는 교육적 방임의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그 외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해주지 않는 의료적 방임도 2001년과 2002년 각각 97건(7.3%)과

148건(8.0%)이나 발생되어 부모로서의 적절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방임 행위들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아동보호 대책이 더욱 필요하다.

Ⅲ. 경찰과 시민의 아동학대의 인식도에 관한 실태분석

1. 조사설계

1) 표본의 구성 및 분석방법

이 연구는 아동학대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와 아동학대의 대처상황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동학대의 가해자는 부모, 교사, 또래 집단 등 다양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에 있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부모에 의한 학대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부모에 의한 학대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3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 동안이었으며, 조사대상 지역으로 서울지역은 강남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를, 대구지역은 달서구, 서구, 수성구, 남구, 중구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일반시민 300명(대구 150명, 서울 150명), 경찰공무원 300명(대구 150명, 서울 150명)을 선정하였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지 경우에는 해당지역의 경찰서 및 파출소를 중심으로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설문지 끝난 후 수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또한 일반시민대상 설문지의 경우에는 조사원이 직접 해당지역을 방문하여 시민들을 만나 설문지를 배부하고 수거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이 조사를 위해서 spss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설문지의 구성

먼저 아동학대 개념에 관한 인식조사를 위해 아동학대의 유형을 4가지 측면, 즉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으로 나누었으며, 유형별로 학대의 정도에 따라 다섯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아동학대를 범죄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 아동학대와 처벌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리고 아동학대의 심각성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아동학대의 대상인 아동의 적절한 연령을 조사하여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학대아동의 연령과 일반시민 및 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학대아동의 연령이 일치하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아동학대의 대처에 관한 인식부분은 크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와 경찰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우, 그리고 경찰공무원과 일반시민 모두를 대상으로 조사한 부분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지역, 성별, 연령, 학력, 혼인여부, 자녀의 수, 종교, 직업 및 소득이라는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일반시민의 경우 여자는 177명(59%), 남자는 123명(41%)으로 여자의 비율이 많았다.

또한 연령별로는 20대에서 40대의 비율이 전체의 66.6%로 많았으며, 학력은 고등학교나 대학교 중퇴자이거나 졸업한 경우가 조사대상자의 79%로 나타났다. 혼인한 경우는 178명(59.3%), 미혼인 경우는 118명(39.3%)이었다. 결혼한 사람 중에서 평균 자녀의 수는 2명이 97명으로 조사대상자의 32.3%를 차지하였으며, 평균 소득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사이의 경우가 103명(34.3%)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남자는 87.0%(261명)였고 여자는 13.0%(39명)로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여자경찰의 비율이 약 4%임에 비하여, 조사대상자 중 여자경찰의 비율이 높았으나 다소간의 차이는 배제하기로 한다. 연령별로는 30대가 125명(41.7%)으로 가장 많았으며, 20대가 87명(29.0%), 40대가 68명(27.7%)이었다.

또한 216명(72.0%)이 기혼자였다. 계급은 정장과 순경이 많았고, 평균소득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 3. 경찰과 시민의 아동학대에 관한 인식도

### 1) 아동학대 유형별 인식

유형별로 각각의 사례에 따라 아동학대의 인식정도는 <표 5>와 같다. 이러한 결과는 제시된 아동학대 사례에 대하여 아동학대라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만을 구분한 것이다.

<표 5> 아동학대 개념의 인식조사

(단위 : 명, %)

내 용	구 분	유 형	일반시민			경찰공무원		
			서울	대구	계	서울	대구	계
손 또는 회초리로 엉덩이를 때린 경우	신체적 학대		17	19	36(12.0)	21	23	44(14.7)
손 또는 회초리로 얼굴, 머리, 뺨 등을 때린 경우			124	122	246(82.0)	133	128	261(87.0)
발로 차거나 깨물은 경우			145	147	292(97.3)	147	145	292(97.3)
혁대로 때린 경우			149	147	296(98.7)	147	148	295(98.3)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			150	150	300(100.0)	150	150	300(100.0)
음란비디오나 음란서적을 보여주는 경우	성적 학대		130	133	263(87.7)	138	133	271(90.3)
아동이 거부하는데도 몸을 만지는 경우			145	144	289(96.3)	135	134	269(89.7)
역지로 아동에게 입맞춤을 하는 경우			138	129	267(89.0)	126	118	244(81.3)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경우			150	148	298(99.3)	149	148	297(99.0)
아동을 강간하는 경우			150	150	300(100.0)	150	149	299(99.7)
폴도 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	정서적 학대		113	122	235(78.3)	125	118	243(81.0)
나가 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			124	132	256(85.3)	136	133	269(89.7)
우리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			120	130	250(83.3)	122	123	245(81.7)
좁은 공간에 장시간 혼자 가두어 두는 행위			146	145	291(97.0)	148	143	291(97.0)
옷을 벗겨 집에서 쫓아내는 행위			139	142	281(93.7)	144	142	286(95.3)
늦게 집에 들어와도 신경쓰지 않는 경우	방임		84	97	181(60.3)	101	86	187(62.3)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는 경우			144	145	289(96.3)	148	149	297(99.0)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			125	141	266(88.7)	136	142	278(92.7)
이유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아무 말 없는 경우			107	114	221(73.7)	114	105	219(73.0)
난치병에 걸렸음에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			143	145	288(96.0)	148	145	300(100.0)

일반시민과 경찰 모두 전반적으로 신체적 학대에서 손 또는 회초리로 종아리를 때리는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례를 아동학대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라고 인식한 사례를 살펴보면, 신체적 학대에서는 '발로 차거나 깨물은 경우', '혁대로 때린 경우', '칼이나 흉기로 위협한 경우'로 나타났다. 성적 학대에서는 '아동의 성기를 만지거나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는 경우', '아동을 강간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서적 학대의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 장시간 가두어 두는 경우', '옷을 벗겨 집에서 쫓아내는 경우'가 아동학대인 것으로 인식하였다. 정서적 학대 중에서도 언어적 학대의 경우에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아동학대로 인식하기는 하였으나, 90% 이상의 비율은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의 경우에는 '며칠동안 밥을 주지 않는 경우', '난치병에 걸렸음에도 그냥 내버려두는 경우'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였다. 다른 유형의 학대와 비교해 볼 때 방임의 경우에는 아동학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낮았는데, 이것은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혼자 집에 있는 아동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치안 논단 6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개념 인식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대구지역 시민들의 아동학대 인식정도가 서울지역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서는 두 지역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정서적 학대의 경우 '짜보기 싫다. 병신 같은 것 등과 같은 말을 하는 경우', '나가죽어라. 갖다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는 경우', '우리집에서 너만 없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경우' 등의 조사에서 대구 지역 시민들이 서울 지역에 비하여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약 6.7%(10명)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방임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대구지역 시민들이 서울지역 시민들에 비해 각각의 사례에서 아동학대라고 인지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범죄성 여부인식

〈표 6〉은 아동학대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의 수를 서울지역과 대구지역 그리고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으로 나누어서 제시하였다.

〈표 6〉 범죄성 인식에 관한 교차분석표

지역	구분	일반시민(명)	경찰공무원(명)	전체(명)
서울	일반시민	146	145	291
	경찰공무원	130	143	273
	전체	276	288	564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서울지역의 시민들이 대구지역의 시민들보다 아동학대를 범죄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아동학대의 유형별 인식조사에서 대구지역의 시민들이 서울지역의 시민들에 비하여 각각의 사례의 경우 아동학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즉 대구지역의 시민들은 비교적 낮은 정도의 학대행위라도 이를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서울지역의 시민들에 비해서 강한 반면 이러한 아동학대 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약하다. 다시 말해, 서울지역의 시민들은 아동학대행위를 범죄라고 생각하여 학대행위를 대구지역의 시민들에 비해 보다 엄격히 구분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찰공무원과 일반시민을 비교했을 때, 경찰공무원이 아동학대를 범죄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이 일선에서 심각한 아동학대사건을 많이 접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3) 아동학대와 체벌과의 구분

〈표 7〉은 아동학대와 체벌과의 구분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경찰공무원과 일반시민들의 응답을 조사한 것이다.

〈표 7〉 아동학대와 체벌과의 구분기준에 대한 조사 ※ 참고: 복수응답 허용한 결과임

내용	구분	일반시민(명)		경찰공무원	
		서울	대구	서울	대구
아이의 연령		19	22	18	28
체벌의 강도		87	98	76	70
사용도구		65	79	41	64
신체부위		40	43	23	34
상처정도		30	51	55	36
부모의 고의성		60	63	72	66
아동의 잘못 여부		31	19	13	27
모든 체벌은 아동학대		11	4	7	20
기타		4	-	-	1
계		347	379	305	346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 모두 아동학대와 체벌과의 구분기준을 체벌의 강도, 사용도구, 부모의 고의성 등으로 구별하고 있었다. 특히 지역간 차이에서 대구지역의 시민과 경찰공무원은 서울지역의 시민과 경찰공무원에 비해 사용도구 및 체벌의 강도를 구분기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모든 체벌을 아동학대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대구지역에서는 경찰공무원이, 서울지역에 있어서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

〈표 8〉은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이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학대 현상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한 것에 대한 결과이다.

〈표 8〉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조사

내용	구분	일반시민(명)		경찰공무원		계
		서울	대구	서울	대구	
심각하지 않다		4	1	5	11	21
보통이다		40	39	37	49	165
약간 심각하다		44	47	38	42	171
심각하다		48	55	64	43	210
매우 심각하다		14	8	6	5	33
합계		150	150	150	150	600

대부분의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은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상황을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되는 아동학대의 사례가 대부분 심각한 사례만을 보도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벌을 가급적 지양하는 교육방침 등으로 인하여 폭력에 대한 용인도가 낮아진 것에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지역별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은 대구지역의 경찰공무원이 서울지역의 경찰공무원에 비해 심각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시민에 있어서는 지역별 아동학대의 심각성 인식에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보호아동의 적정 연령

내용	구분	일반시민(명)		경찰공무원	
		서울	대구	서울	대구
만 7세 이하		18	13	14	13
만 12세 이하		79	78	85	92
만 15세 이하		29	31	35	25
만 18세 이하		24	26	15	17
기타			2	1	3
합계		150	150	150	150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보호아동의 적정 연령을 일반시민들은 만 12세까지, 즉 초등학교까지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경찰공무원도 아동학대로부터의 보호아동의 연령은 만 12세 이하의 초등학교까지가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법에서 규정하는 보호아동의 연령은 우리나라와 미국의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의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는 만 15세 미만의 자, 대만의 경우는 법률상 만 12세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만 18세 미만의 소년에게도 아동학대 관련조항에는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장희승, 2002, p. 64).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이라는 용어는 만 12세까지의 초등학교까지를 이르는 말이므로

아동학대라고 규정할 때 만 18세까지의 청소년도 포함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고 볼 수 있다. 아동학대사건이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조사한 2002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서도 아동학대의 70% 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아동들에 대하여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03, p. 30).

아동학대가 만 13세를 넘어 중학생 이상의 청소년에 대하여 발생하는 경우, 피학대자는 그들 자신이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나이이므로 부모로부터 일방적인 학대를 수용하는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학대아동의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하여 아동의 범위를 한정시킨 뒤 그들의 입장에서 학대를 바라보고, 어떠한 행위를 아동학대라고 규정해야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여타의 범죄자와 아동학대사범을 다르게 처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리기에 보호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아동을 보호함에도 그 의의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아동의 범위를 넓혀 많은 대상을 보호 하에 두는 것보다는 학대아동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그 학대아동에게 적합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 4. 경찰과 시민의 아동학대의 대처실태에 관한 인식도

##### 1) 일반시민의 경우

##### 가. 아동학대사건 발견 시 신고여부

자신의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모두 259명(86.3%)이고 도움을 청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은 41(13.7%)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일반시민들은 아동학대 발생시에 신고를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어느 기관에 신고를 할 것인가를 물어 본 결과는 〈표 10〉와 같다.



〈표 10〉 신고기관

내 용	구 분	빈도(명)	비율(%)
파출소 등 경찰관서(112)		81	31.3
아동학대예방센터(139)		143	55.2
방송 등 언론매체		3	1.1
이웃·친척		31	12.0
긴급전화 119		1	0.4
합계		259	100

신고기관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에 도움을 청한다고 응답한 사람이 143명(55.2%)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파출소 등 경찰관서에 신고하며, 이웃·친척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와 같이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신고할 것이라는 사람이 과반수를 넘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경찰관서에 신고할 것이라는 사람들도 상당수를 차지하였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경찰관서를 선택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동학대사건을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이들은 아동학대사건을 수사하여 아동학대사범을 철저히 처벌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에 아동학대사건의 신고처로써 경찰관서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파출소 등 경찰관서가 아동학대의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여야 하는 기관임에는 틀림없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예방센터라는 독립된 기관이 아동학대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관할 부서의 활동보다는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활동이 보다 체계적이며 광범위하다. 그러므로 적어도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존재는 시민들이 인식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아직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 홍보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역할 등을 충분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비슷하게 이웃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할 시 신고할 것이라는 사람은 전체 300명 중 257(85.7%)명이었으며, 43명(14.3%)은 신고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가정에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기관을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11〉 신고기관

내 용	구 분	빈도(명)	비율(%)
파출소 등 경찰관서(112)		120	46.6
아동학대예방센터(139)		126	49.0
방송 등 언론매체		2	0.8
이웃·친척		8	3.2
긴급전화 119		1	0.4
합계		257	100

신고기관에 있어서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126명(49%)으로 가장 많았으며, 파출소 등 경찰관서의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고기관에 있어서는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와 이웃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차이를 보였는데, 이웃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에 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고기관으로 경찰관서를 택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에는 범죄라기보다는 훈육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하고, 이웃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일어난 경우에는 범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 실제로 이웃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람들이 범죄의 접수 및 수사는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고이유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아동학대 신고기관을 모르기 때문에 경찰관서에 신고한다는 응답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에 덧붙여 자신의 가정과 이웃 가정에 아동학대가 발생한 경우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아동학대는 여전히 가정내의 문제이고 양육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더 이상 아동학대는 훈육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훈육의 차원에서 가한 처벌이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훈육효과는 장담할 수 없으며, 심한 경우 아동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비록 외부에서 인지할 수 있는 상처는 없을지라도 아동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의 정서적 학대는 그것이 비록 교육적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아동학대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처벌을 지양하고, 훈육방법을 비폭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나. 경찰공무원의 개입에 대한 시민의 태도

경찰공무원의 대응과 관련하여 일반시민들이 아동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했을 경우, 경찰공무원이

치안 논단 6

적극적으로 출동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표 12〉 경찰공무원의 신속 대처에 관한 인식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4	1.3
매우 그렇다		38	12.7
그렇다		115	38.3
보통이다		116	38.7
그렇지 않다		27	9.0
매우 그렇지 않다		300	100
합계			

경찰공무원이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42명이었으며, 그 이외의 사람들은 경찰공무원이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아동학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불만족은 연령층이 젊을수록, 즉 사회활동연령인 20대와 30대에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경찰공무원은 아동학대 사건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2) 경찰공무원의 경우

가. 아동학대관련 교육경험

아동학대업무와 관련하여 97명(32.3%)의 경찰 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203명(67.7%)의 경찰공무원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이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제대로 행해지지 않고 있음을 반영한다.

많은 시민들이 아동학대 발생신고를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경찰관서 등에 신고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을 볼 때,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은 업무 능력이 의심스러우며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점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차후 아동학대 신고접수 시 경찰의 적절한 대응조치 규정을 매뉴얼화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적절한 교육의 효과는 〈표 13〉에서와 같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교육의 효과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 97명 중 6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함으로써 교육이 업무수행에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재의 교육프로그램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교육이 모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3〉 교육의 효과성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	14.4
도움이 되었다		52	53.6
보통이다		27	27.8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4.1
합계		97	100

나. 아동학대사건 처리 메뉴얼의 적정성

아동학대 사건처리절차를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137명으로 전체의 45.7%이며 모르고 있는 경찰공무원은 163명으로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이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초동수사기관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 매우 우려스럽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사건처리 지침 등의 책자를 교부하여 관련 교육을 받음으로써 적절한 처리절차를 인지하여야 할 것이다.

〈표 14〉 사건처리 절차의 불만족 이유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처리절차가 복잡해서		44	47.8
경찰이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		6	6.5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개입		26	28.3
기타		16	17.4
합계		92	100

또한 아동학대 사건처리 절차를 알고 있는 경찰공무원 중에서 그 절차에 만족하는 경찰공무원은 45명(32.8%)이었으며, 나머지 92명(67.2%)의 경찰공무원은 사건처리가 복잡해서 혹은 경찰이 너무 소극적으로 사건처리에 개입하므로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에 대해 경찰의 개입권한 및 그 정도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정 및 지침이 요구된다.

다. 응급조치규정 및 보호조치규정의 인지도

현행 아동복지법의 응급조치규정은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아동학대행위자로부터의 격리 또는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의 인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보호조치로써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와 학대의 방지를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조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으로부터 보호의뢰를 받았을 경우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보호자 또는 대리양육을 원하는 연고자에 대하여 그 가정에서 보호·양육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 이고, 제3호는 '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자에게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를 위탁하는 것' 이며 제4호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에 적합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시키는 것' 이다. 이러한 응급조치 규정과 보호조치규정의 인지도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5〉 응급조치 규정의 인지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73	24.3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것만 안다		189	63
정확히 알고 있다		38	12.7
합계		300	100.0

〈표 16〉 보호조치의무의 인지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모른다		66	22.0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것만 안다		190	63.3
정확히 알고 있다		44	14.7
합계		300	100.0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아동보호법상의 응급조치 및 보호조치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경찰들이 15% 정도에 그친다는 것은 일선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하여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교육 및 아동학대사건 처리절차의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보여준다.

더욱이 이 연구에서 조사대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대부분이 파출소 및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경찰공무원은 최일선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그리고 조사결과 아동학대사건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예방센터 및 경찰관서에 신고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경찰공무원은 아동학대의 처리 및 관련법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라. 아동학대사건 접수 및 처리경험

아동학대 관련 신고를 접수받은 경험을 묻는 문항에서는 84명의 경찰공무원이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고접수 이후의 사건처리에 있어서 단독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우가 많았다.

〈표 17〉 아동학대 접수경험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있다		84	28.0
없다		216	72.0
합계		300	100.0

〈표 18〉 신고접수 후 사건처리

내용	구분	빈도(명)	비율(%)
아동학대 예방센터에 인계		14	16.7
아동학대 예방센터 직원과 동행하여 현장 출동		16	19.0
단독으로 현장 출동		48	57.1
기타		6	7.1
합계		84	100.0

아동학대의 신고접수 후 사건처리과정에서 단독으로 현장에 출동할 경우가 57.1%(48명)에 이르지만, 〈표 18〉의 조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찰공무원들은 아동학대 사건처리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우 실제로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행해질지는 매우 의문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경찰공무원의 아동학대 처리절차를 철저히 교육시키고, 경찰공무원 혼자서 아동학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다른 경찰공무원이나 아동학대예방센터 직원과 함께 출동하여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가. 아동학대 대처기관의 속지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이 생각하는 아동학대와 관련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 기관에 대한 응답은 <표 19>와 같다.

<표 19> 아동학대의 대처기관

내용	구분	일반시민(빈도(%))	경찰공무원(빈도(%))
경찰관서		99(33.0)	97(32.3)
아동학대 예방센터		166(55.3)	121(40.3)
119 구급대		4(1.3)	6(2.0)
구청이나 시청의 아동복지과		25(8.3)	66(22.0)
종교기관이나 민간상담소		1(0.3)	5(1.7)
기타		5(1.7)	5(1.7)
합계		300(100.0)	300(100.0)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 모두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기관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일반시민의 경우는 55.3%인 166명이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응답하였으며 경찰관서 등에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33%(99명)를 차지하였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40.3%(121명)가 아동학대예방센터라고 응답하여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일반시민에 비하여 그 정도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관서라고 응답한 경우는 32.3%(97명)로 일반시민과 비슷한 정도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구청이나 시청의 아동복지과라고 응답한 경우도 22.0%(66명)로 나타나 일반시민의 생각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이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호조치' 등의 처분에 시장·군수·구청장 등, 행정기관장의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듯 하다.

즉 실무에서는 구청이나 시청의 협조를 요구하기 때문에 일반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경찰공무원은 구청이나 시청의 아동복지과도 아동학대 대처기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한 이와 연장선상에서, 아동학대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역할에 대한 질문 결과, 68%(205명)의 경찰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응답함으로써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아동학대문제의 관한 주 기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일지라도 아동학대문제에 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적극적인 참여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아동복지법상 신고의무자규정의 인식

신고의무자 규정의 인식에 관한 조사 결과,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 모두 아동복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자세한 결과는 <표 20>와 같다.

<표 20> 아동복지법 상의 신고의무자 규정의 인지

내용	구분	일반시민(빈도(%))	경찰공무원(빈도(%))
전혀 모른다		154(51.3)	65(21.7)
법률상 규정이 있는 것만 안다		127(42.3)	194(64.7)
정확히 알고 있다		19(6.4)	41(13.7)
합계		300(100.0)	300(100.0)

아동복지법상의 신고의무자규정의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의 경우 과반수 이상이 그러한 규정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154명(51.3%)의 시민들은 신고의무자 규정의 존재 자체도 몰랐으며 127명(42.3%)의 시민들은 법률상 규정의 존재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적극적으로 아동복지법의 취지를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경찰공무원은 아동복지법상의 신고의무자 규정을 정확히는 잘 알지 못하지만 신고의무자규정이 있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자 규정의 존재는 경찰공무원보다도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다. 학대아동의 보호조치

학대아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로서 어떠한 조치가 행해져야 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1>과 같다.

<표 21> 학대아동의 보호조치

내용	구분	일반시민(빈도(%))	경찰공무원(빈도(%))
경제적 원조		4(1.3)	17(5.7)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		159(53.0)	165(55.0)
상처를 치료할 병원		18(6.0)	12(4.0)
위탁가정		14(4.7)	19(6.3)
모두 필요없다		2(0.7)	4(1.3)
모두 필요하다		103(34.3)	83(27.7)
합계		300(100.0)	300(100.0)

학대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조치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159명(53.0%)의 시민들이 상담을 통한 심리적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가장 우선 시 하여야 할 조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기관은 학대아동에게 무엇보다 정서적으로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여 학대아동이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심리적 안정과 더불어 위탁가정 및 상처를 치료할 병원 그리고 경제적 원조 등 전반적인 보조가 모두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라. 아동학대사범의 처벌조치

부모인 아동학대사범에 대해서 어떠한 처벌이 행해져야 학대아동과 아동학대사범 모두에게 바람직한지를 조사한 결과는 <표 22>과 같다.

<표 22> 아동학대사범의 처벌

내 용	구 분	일반시민(빈도(%))	경찰공무원(빈도(%))
충분한 교육 실시		42(14)	62(20.7)
상담원과의 상담		58(19)	42(14.0)
경찰의 경고조치 및 전과가 남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호처분		73(24.3)	79(26.3)
법원의 판결을 통한 적극적 처벌		122(40.7)	113(37.7)
기타		5(1.7)	4(1.3)
합계		300(100.0)	300(100.0)

일반시민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한 적극적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0.7% (122명)이고, 경찰의 경고조치 및 전과가 남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24.3%(73명)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담원과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19%(58명)로 경찰공무원의 14%(42명)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법원의 판결을 통한 적극적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경우가 37.7% (113명), 경찰의 경고조치 및 전과가 남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호처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경우는 26.3%(79명)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공무원의 경우는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상담원과의 상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시민과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경찰공무원은 아동학대사범을 검거하여 처벌하는 위치에 있고, 일반시민은 그 반대의

위치에 있으므로 서로의 입장에서 일반시민은 보다 편안한 분위기의 상담을, 경찰공무원은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 모두 법원의 판결을 통한 아동학대사범의 적극적인 처벌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더불어 전과가 남지 않는 범위에서의 보호처분이나 경찰의 경고조치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여 일반시민과 경찰공무원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걱정하다고 생각하는 처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상담원과의 상담이나 충분한 교육의 실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전과가 남는 일반 범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상대적으로 상담이나 교육보다는 강하고, 전과가 남는 일반 형벌보다는 약한 아동학대 사범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며 교육이나 상담은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예방센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제로 아동학대사범에 대한 조치결과로는 2001년의 경우 상담이 7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아동과의 격리조치를 실시한 경우가 13.2%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2002년의 경우에는 상담이 64.7%, 아동과의 격리조치는 25.3%로 나타나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추세에 있다고 생각된다.

IV. 경찰의 아동학대에 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

1. 아동학대 관련 법규의 정비

1) 아동학대 분류심사에 대한 준거의 표준화

아동학대의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할지라도 신고된 모든 아동학대사례를 아동학대범죄라고 보기는 어렵다. 적어도 국가의 관여 및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아동학대사례의 경우는 신고된 아동학대사례 중에서도 심각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의사, 아동학대 상담 전문가, 경찰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일정한 준거에 따라 사정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아동학대사례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즉 아동의 신체 상황, 학대현장 등의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하여 의사, 아동학대 상담 전문가, 경찰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대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될 때는 학대부모를 형사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전담하여 각종 교육 및 치료과정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교육 및 대화기법 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전구분작업과 형사절차진행에 있어서 증거확보를 위해서는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기본적으로 그것이 아동학대예방 센터에 접수가 되더라도 경찰관이 아동학대예방

센터 직원과 동행하여 기본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동학대사건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사소한 것에서부터 심각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아동학대신고 접수건수는 아동인구에 비해 매우 적고<sup>8)</sup>, 아동학대 인식조사에서의 결과에서도 나온 것과 같이 회초리로 손이나 종아리를 때린 경우 등은 아동학대로 인식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볼 때, 아동학대의 신고를 할 상황이라면 상당한 정도의 위협이 발생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심각한 아동학대 사례라면 재판상황으로 까지 사건이 진행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초기 현장에서의 증거 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경찰이 아동학대사건의 현장에 출동함으로써 증거자료를 수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2) 응급조치규정과 보호처분규정의 보완

‘아동복지법’ 제27조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격리 또는 치료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지체 없이’라는 규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좀 더 명확한 한계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을 ‘신고 받은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라고 제한을 두거나, 급박한 아동학대의 현장이 신고된 때는 ‘10분 이내’, 혹은 ‘1시간 이내’ 등 즉각적으로

현장에 출동하도록 하는 시간적인 제한을 두어야 한다(양영식, 2001, p. 64).

또한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의 조사나 격리 또는 치료기관에의 인도 지시를 아동학대자가 친권을 들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응급조치 규정을 방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의 마련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경우 학대자의 처벌뿐만 아니라 학대아동의 보호와 학대아동과 가해부모와의 건전한 관계 재정립을 위해서라도 적절한 보호처분을 필요로 한다. 보호처분의 종류로는 접근금지명령, 보호·양육·교육금지명령, 피해아동의 전문상담보호기관으로의 인도명령, 사회봉사명령, 상담·수강·관찰명령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호처분도 일시적이고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므로 이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진영광, 2000, p. 5). 이를 위해서는 일반인들의 관심 및 유관기관의 협조 등을 기반으로 하여 그룹 홈의 확충이나 위탁가정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할 것이다.

## 2.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강화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은 크게 사법기관(경찰), 의료기관, 교육기관, 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과의 협조관계를 들 수 있다(정운수, 2003, pp. 436-442).

우선 경찰은 아동학대의 신고접수기관

이므로 현장조사와 응급조치 후 아동학대예방센터에 의뢰하여 학대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아동학대의 신고를 접수받고 아동이 응급조치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하였을 때, 혹은 가해부모의 초기저항이 심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경우에 경찰의 협조를 구하게 된다. 경찰과의 협조시스템은 112망에 의해서 협조 요청을 하게 되면 각 지역 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계에 신고되어 사례가 접수되고 경찰과 함께 현장조사에 동행하게 된다. 아동복지법 제27조에는 아동학대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아동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하며, 응급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sup>9)</sup>와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sup>10)</sup>를 근거로 학대행위가 목전에서 행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고, 시민들도 아동학대사건에서 경찰들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는 가에 대한 질문에서 상당수가 회의적으로 응답하여 경찰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경찰공무원이 아동학대 처리절차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내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낮은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를 포괄하는 “대여성·아동범죄 실무메뉴얼”을 제작·배포하여 아동학대사례의 수사요령과 아동학대예방센터와의 협조방안 등을 교육시키고 있다(정운수, 이정희, 2003, p. 437).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는 아동학대의 신고의무자인 동시에 치료자이고, 가해자와 학대아동에 대한 의료적 소견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전문적 행위자이므로 이들과의 연계는 특히 중요하다. 현재 중앙아동학대예방센터는 거시적 차원에서 대한의사협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각 지방아동학대예방센터들은 지역내의 대학병원, 산부인과병원, 소아과, 소아정신과 성형외과 등의 협력병원을 가지고 있다. 의료기관과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는 서울특별시를 들 수 있다. 강남병원에서는 학대아동의 검진 및 치료 병원으로 지정되어 응급조치나 치료를 전담으로 하고 있으며, 학대아동들은 일반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왔기에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와 협조하여 실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학대의 경우에는 경찰병원에 진찰을 의뢰하고 있다. 그리고 심각한 신체적 학대로 분류될 경우에는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소견을 제시해 주기 위해 별도의 아동학대 판정팀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병원 및 서울대 병원과 협조체계를 갖추고 있다.<sup>11)</sup>

아동학대의 원인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동학대는 학대부모의 알코올 및 약물